

2022년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정기총회 서면결의서

구 분	안 건	의 결 란	
		찬 성	반 대
제1호	2021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제2호	2021년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사업 및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제3호	2021년 당기 이익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제4호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승인의 건		
제5호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조합원 재가입 규약 개정의 건		
제6호	2022년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제7호	2022년 추가경정예산 위임의 건		
※ 의결란에 찬·반 여부를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2022년 정기총회 안건에 대해 이와 같이 서면 결의 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조 합 원	생년월일	
	성 명	(인)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귀중

2022년도 정기총회 회의자료

2022. 2. 24(목)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나래** 

목 차

○ 전차회의록	5
○ 부의안건	
제1호 의안. 2021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10
제2호 의안. 2021년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사업 및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18
제3호 의안. 2021년 당기 이익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51
제4호 의안.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승인의 건	52
제5호 의안.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조합원 재가입 규약 개정의 건	54
제6호 의안. 2022년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56
제7호 의안. 2022년 추가경정예산 위임의 건	96
○ 정관	97

우수조합원 시상

1. 이름 : 박지영
2. 생년월일 : 1972년 2월 10일
3. 추천훈격 : 우수조합원상 이사장
4. 부상 : 금1돈 나래벤티지

장기근속상 시상

1. 대상자 ; 2명

이름	생년월일	소속	근무기간
송순애	71.03.21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	2016.10.24.~2021.12.31. (5년 2개월 8일)
김명란	79.03.10	희망나래일터	2016.12.12.~2021.12.31. (5년 20일)

2. 추천훈격 : 장기근속상 이사장

3. 부상 : 특별휴가 3일

전차회의록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2021년 임시총회 의사록

1. 총회 개최 공고일 : 2021.07.12.(월)

2. 총회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1.07.21.(수) 19:00

나. 장소 : 우리법인 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73, 101호)

3. 참석자

가. 재적 조합원 : 97명

- 강명숙, 강명희, 강미선, 강봉신, 강선승, 강옥림, 강우진, 강정임, 고미숙, 고승우, 고영자, 고옥열, 고은숙, 고은애, 고현수, 김경자, 김계생, 김규나, 김금순, 김동순, 김명란, 김미경, 김민선, 김선영, 김성숙, 김순이, 김양선, 김양진, 김양희63, 김양희64, 김인자, 김정림, 김정하, 김종청, 김준곤, 김지수, 김진희, 김현정, 김효정, 김희권, 문성수, 문영란, 문영순, 박은경, 박인향, 박지영, 배인호, 변유정, 변정호, 부정미, 부현주, 서지순, 성정분, 송만숙, 송문환, 송상희, 송순애, 신용순, 신현아, 안형건, 양기훈, 양윤석, 오식민, 오윤정, 오은영, 원복희, 원정환, 이경미, 이경준, 이명희, 이묘희, 이봉준, 이수자, 이영권, 이옥윤, 이춘경, 이춘선, 이현숙, 이효숙, 임정희, 임주혜, 임진숙, 임혜영, 장현준, 장호진, 정용찬, 정주은, 주장현, 최영열, 최은정, 최종임, 한미자, 허정원, 현명현, 현명희, 현수영, 홍금나

나. 참석 조합원 : 49명

- 강명숙, 고승우, 고옥열, 고은숙, 고현수, 김경자, 김규나, 김금순, 김명란, 김양선, 김양진, 김양희63, 김정림, 김종청, 김지수, 김진희, 김희권, 문영란, 박인향, 배인호, 변유정, 변정호, 성정분, 송만숙, 송문환, 송상희, 송순애, 신현아, 안형건, 양기훈, 양윤석, 오식민, 오은영, 원정환, 이경준, 이봉준, 이영권, 이춘선, 이현숙, 임정희, 임주혜, 임혜영, 장현준, 정용찬, 주장현, 최영열, 한미자, 허정원, 현명현

4. 총회 안건

- 제1호 의안,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출자좌수 및 출자금 증가 등록의 건
- 제3호 의안,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제3기 임원 선출의 건
- 제4호 의안, 2021년 추가경정예산 위임의 건
- 제5호 의안, 기타 의안의 건

5. 총회 내용

가. 성원보고와 개회 선언

- 의장이 전체 조합원 97명 중 49명 참석으로 성원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나. 의사록 서기 및 의사록 서명자 선출

- 의장이 회의의 기록과 확인을 위해 현명현 조합원을 지명하고, 정관 제38조에 따라 의사록에 서명 날인할 조합원을 선출하고자 박인향, 송순애, 임주혜 조합원을 지명하고 출석한 조합원들에게 그 가부를 물은 바, 출석조합원 전원이 위 3인을 의사록 서명날인 인으로 선출하는 것에 대하여 참석조합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다. 의사일정 확정

- 의장이 공고된 상정 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사일정 및 의안심의 순서에 따라 진행할 것을 묻고, 전원 동의로 의안 순서를 확정하다.

라. 제1호 의안,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 의장은 정관 제33조 제4호에 따라 박인향상임이사에게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도록 하고, 그 가부를 참석한 조합원에게 물은 바, 참석조합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마. 제2호 의안 : 출자좌수 및 출자금 증가 등록의 건

- 의장은 정관 제33조 제10호에 따라 박인향상임이사에게 출자좌수 및 출자금 증액 내용과 등기의 건에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 바, 참석조합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다 음

- 등록할 출자좌수 및 출자금 : 15,060좌수, 금1,506,000,000원(일십오억육백만원)
- 등록 날짜 : 2021년 7월 21일

바. 제3호 의안 :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제3기 임원 선출의 건

- 의장은 현재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등기이사들이 2021년 7월 25일자로 임기 만료됨에 따라 정관 제33조 제3호에 의거하여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임원 선출에 대하여 후보 추천을 요청하다
- 이사로 최영열, 박인향, 임혜영, 이춘선, 배인호, 김양진, 김진희, 송만숙, 변유정, 감사로 안형건, 강석반이 추천을 받다.

<이사후보>

- 최영열, 박인향, 임혜영, 이춘선, 배인호, 김양진, 김진희, 송만숙, 변유정

<감사후보>

- 안형건, 강석반

- 의장이 원안 외 이사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별도 추천 의견이 없어 추천 후보를 상정하다.
- 의장이 추천된 이사 및 감사 후보 전원에게 조합원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조합원에게 찬반 의견을 묻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다.
- 의장이 이사로 선출된 자 가운데 이사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자 안형건 조합원이 최영열조합원을 이사장 연임으로 추천하다.
- 의장이 다른 후보가 없는 지를 확인하고 조합원 전원 동의로 최영열조합원을 이사장으로 선출하다.



사. 제4호 의안 : 2021년 추가경정예산 위임의 건

- 의장은 정관 제33조 제4호에 따라 박인향상임이사에게 2021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승인사항을 이사회의로 위임함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고, 그 가부를 참석한 조합원에게 물은 바, 참석조합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파. 폐회선언

- 20시 의장이 조합원들에게 상정할 다른 안건이 없음을 확인하고 총회의 목적의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

2021년 7월 21일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의장 이 사 장	최 영 열	
조 합 원	박 인 향	
조 합 원	송 순 애	
조 합 원	임 주 혜	
기 록	현 명 현	



제 1호 의안

2021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제의 관계조항 : 정관 제33조 제6항

주문사항 :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2021년도 회계 및 사업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일시 : 2022년 2월 8일 (화)
2. 감사범위 :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운영 및 회계 전반 사항
3. 감사자 : 안형건 감사, 강석반 감사
4. 감사근거 :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정관에 의거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감사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감사를 실시함.
5. 감사 결과 : 감사보고서 첨부

감사보고서

본인은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정관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로 종결되는 종합적인 업무추진 내용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의 집행상황 등을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및 시설운영 사항

- 종사자 호봉획정 및 인사관리, 자산관리, 후원금 및 후원물품 관리 등 업무처리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사업관리안내에 따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외부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발달장애인들에게 신규 직무개발 등 전문적인 사회 서비스 제공,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2. 예산 편성·집행·결산 적정성 및 회계기준·공정하고 타당한 관행 준수 여부

- 예산집행 상황 등에 대한 감사결과 제반 규정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업무집행과 결산서의 각 항과 그 회계처리가 적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희망나래복합공간 완공에 대한 제반사항을 확인 한 바,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따라 적정하게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없이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별도의 부가등기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건물보존 등기도 타당하게 이루어졌습니다.
- 공사대금 지급에 따른 금융기관 차입금은 농협은행 공공시설자금에 의한 기채로서 적절하게 이뤄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2021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1,114,806,687원
2021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782,343,401원
이월금액은 332,463,286원입니다.
- 2021년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10,048,798원
2021년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70,048,798원
이월금액은 40,000,000원입니다.

3. 기타

- 조합원 및 임직원, 지역사회 모두의 노력의 결실인 희망나래 복합공간이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알차게 가꾸어 나갔으면 하는 기대와 함께 모범사례로 널리 알렸으면 합니다.

2022년 2월 8일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감 사 안 형 건

감 사 강 석 반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이사장 귀하

감사보고서

본인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0조 제1항과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정관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소속기관 "희망나래활동센터"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로 종결되는 종합적인 업무추진 내용과 일반회계 예산의 집행상황 등을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및 시설운영 사항

- 종사자 호봉획정 및 인사관리, 비품관리, 후원금 및 후원물품 관리 등 업무처리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사업관리안내에 따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적극적인 외부공모사업 수행 등 이용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이전 한 만큼 장애인의 잠재능력 향상을 위한 개인별 계획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 편성·집행·결산 적정성 및 회계기준·공정하고 타당한 관행 준수 여부

- 예산집행 상황 등에 대한 감사결과 제반 규정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업무집행과 결산서의 각 항과 그 회계처리가 적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보조금 집행에 있어 지침을 준수하여 회계처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세입 결산액은 433,610,655원
2021년 세출 결산액은 426,839,970원
이월금액은 6,770,685원입니다.

3. 기타

- 주간보호사업과 더불어 코로나19 등 전염병 대응지침 수립에 따른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2022년 2월 8일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감사 안형건

감사 강석반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이사장 귀하

감사보고서

본인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0조 제1항과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정관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소속기관 “희망나래일터”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로 종결되는 종합적인 업무추진 내용과 일반회계 예산의 집행상황 등을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및 시설운영 사항

- 사업추진 및 시설운영 관련 문서가 적절히 관리, 보관되고 있으며, 직원 급여 등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 회계관련 법령 등에 의해 철저히 지급, 관리되고 있습니다.
- 보호작업장에서 근로작업장으로 지난 해 전환되면서 근로장애인들이 늘고 있음은 고무적인 사항입니다.
- 근로장애인들의 취업기능 향상과 이를 지원하는 직원들의 역량강화에 더욱 더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2. 예산 편성·집행·결산 적정성 및 회계기준·공정하고 타당한 관행 준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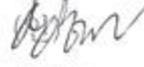
- 예산집행 상황 등에 대한 감사결과 제반 규정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업무집행과 결산서의 각 항목과 그 회계처리가 적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2021년 세입 결산액은 2,888,418,549원
2021년 세출 결산액은 2,154,655,539원
이월금액은 733,763,010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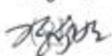
3. 기타

- 발달장애인의 고용 확대, 직무개발과 더불어 코로나 19 등 전염병 대응지침 수립에 따른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2022년 2월 8일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감사 안형건 

감사 강석반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이사장 귀하

감사보고서

본인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0조 제1항과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정관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소속기관 “희망나래공동체”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로 종결되는 종합적인 업무추진 내용과 일반회계 예산의 집행상황 등을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및 시설운영 사항

- 인사관리, 비품관리, 자산 조치사항 등 폐지 신고처리가 적정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2. 예산 편성·집행·결산 적정성 및 회계기준·공정하고 타당한 관행 준수 여부

- 예산집행 상황 등에 대한 감사결과 제반 규정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업무집행과 결산서의 각 항과 그 회계처리, 불용예산 처리가 적정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 2021년 세입 결산액은 46,370,452원
2021년 세출 결산액은 28,976,470원
이월금액 17,393,982원은 법인으로 전출되었습니다.

2022년 2월 8일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감사 안형건

감사 강석반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이사장 귀하

감사보고서

본인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0조 제1항과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정관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소속기관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로 종결되는 종합적인 업무추진 내용과 일반회계 예산의 집행상황 등을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및 시설운영 사항

- 사업추진 및 시설운영 관련 문서가 적절히 관리, 보관되고 있으며, 직원 급여 등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 회계관련 법령 등에 의해 철저히 지급, 관리되고 있습니다.
- 2020년도 감사 지적사항 중 하나인 외부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난해 총 4개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내용(한국무용, 요리, 원예 활동, 미술)으로 총30백만원 이상의 기금을 지원받아 충실히 이행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동백활동센터 이용 장애인들의 적성이나 특성을 사전 파악하여 이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2. 예산 편성·집행·결산 적정성 및 회계기준·공정하고 타당한 관행 준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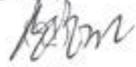
- 예산집행 상황 등에 대한 감사결과 제반 규정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업무집행과 결산서의 각 항과 그 회계처리가 적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2021년 세입 결산액은 536,116,655원
2021년 세출 결산액은 516,180,635원
이월금액은 19,936,020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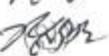
3. 기타

- 이용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 날이 하루 빨리 올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2022년 2월 8일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감사 안형건 

감사 강석반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이사장 귀하

감사보고서

본인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0조 제1항과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정관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소속기관 '제주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로 종결되는 종합적인 업무추진 내용과 일반회계 예산의 집행상황 등을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및 시설운영 사항

- 사업추진 및 센터 운영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내 생활을 스마트홈케어 사업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스마트홈케어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한 장애인들의 불편 및 안전을 위해 팀별 소통 및 회의 등 확대가 필요합니다.
- 만족도 조사에서 지원주택부문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또는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2. 예산 편성·집행·결산 적정성 및 회계기준·공정하고 타당한 관행 준수 여부

- 예산집행 상황 등에 대한 감사결과 제반 규정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업무집행과 결산서의 각 항과 그 회계처리, 불용예산 처리가 적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2021년 세입 결산액은 1,006,475,685원
2021년 세출 결산액은 1,006,185,000원
이월금액은 290,685원입니다.

3. 기타

- 지속 가능한 제주형 통합돌봄모델 개발 및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2022년 2월 8일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감사 안형건

감사 강석반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이사장 귀하

제 2호 의안

2021년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사업 및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제의 관계조항 : 정관 제33조 제5항

주문사항 : 2021년도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사업 및 결산보고서를
승인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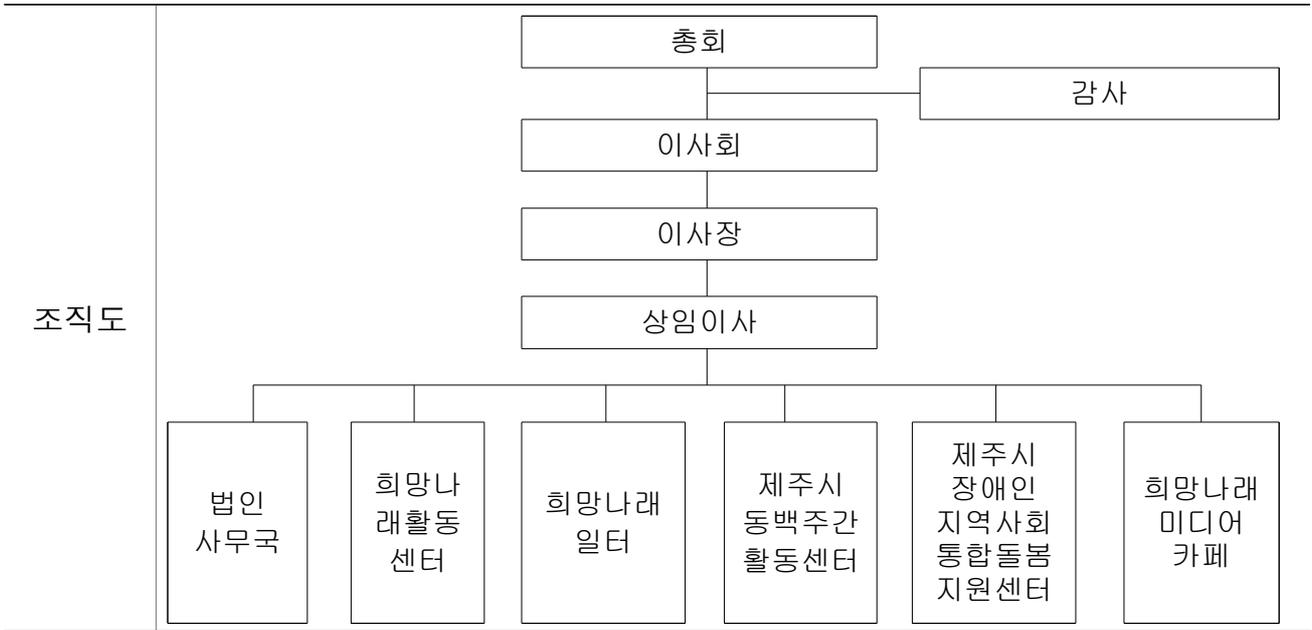
2021년도 사회적협동조합등 사업결과 보고서

(제1쪽)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설립연월일 2015년 11월 3일		업태 서비스업, 제조업, 도소매, 통신판매업		
	인가번호 보건복지부 제79호		사업자등록번호 695-82-00070		
	주소	주사무소 제주도 구산동길 15			
		제1지사사무소 제주도 구산동길 15, 2층 (희망나래활동센터)			
		제2지사사무소 제주도 중앙로 175, 3층(이도일동) (희망나래일터)			
		제3지사사무소 제주도 조천읍 북촌12길 76-5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			
		제4지사사무소 제주도 중앙로 273, 101호,(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출자금		97명/ 1,506백만원			
주 사 업 유 형	[]지역사업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취약계층 고용형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				

	연월일	주요내용
조직 연혁	2015. 07. 18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창립총회 개최공고
	2015. 07. 27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창립총회 개최
	2015. 11. 03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설립인가(보건복지부)
	2015. 11. 19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희망나래활동센터 인가(제주시)
	2016. 06. 17	희망나래활동센터 개원식
	2016. 06. 22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2016. 09. 05	법인사무소 이전(제주시 중앙로 248, 아산빌딩 4층)
	2016. 10. 01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 선정
	2016. 12. 27	사회적기업 인증
	2017. 01. 12	장애인가동생활가정 희망나래공동체 인가
	2017. 03. 29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선정
	2017. 05. 04	장애인보호작업장 희망나래일터 인가(제주시)
	2017. 06. 30	부총리 표창장 수상
	2017. 09. 26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본점 및 지점 이전 등록
	2017. 11. 15	희망나래일터 개원식
	2017. 12. 06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인쇄물, 쇼핑백)
	2018. 04. 05	2018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선정

	2018. 04. 12	2018년 장애인고용촉진대회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
	2018. 07. 25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제2기 임원 선출
	2018. 11. 30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추가 지정(DM발송, 문서파일류)
	2018. 12. 14	14가지 희망 출판기념회 및 문화예술사업보고회 개최
	2019. 01. 21	공공형주간보호시설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 위탁 체결(제주시)
	2019. 07. 16	희망나래 커뮤니티 아트센터 선정(제주삼다수)
	2019. 08. 23	제주형 커뮤니티케어 '제주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2019. 04. 15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 개원식
	2019. 10. 02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본점 이전 등록(제주시 중앙로 273, 101호)
	2019. 11. 04	희망나래일터 제2사무소 개소식
	2019. 11. 28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 개소식
	2019. 12. 16	제5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최우수상 수상
	2020. 04. 02	제주지역 사회적가치 측정 연구 지원사업 선정
	2020. 04. 29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2020. 04. 29	희망나래 복합공간 건립위원회의 개최
	2020. 11. 21	제주사회적경제기업 우수사례 선정
	2020. 12. 24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6종목)
	2021. 03. 12	희망나래 복합공간 착공식
	2021. 06. 18	제1회 제주를 밝히는 사회적가치 실현대상 사회적경제기업 최우수상 수상(제주특별자치도)
	2021. 09. 01	발달장애인의 터전, 희망나래복합공간 '시민자산화'프로젝트 클라우드 펀딩 진행
	2021. 12. 07	2021 사회적경제기업 클라우드펀딩 우수상 수상(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1. 12. 31	희망나래 복합공간 준공
정관·규약	변경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변경 없음 [<input type="checkbox"/>]변경
	변경 내용	
설립목적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는 조합원의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게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환경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의사결정기구	[<input checked="" type="checkbox"/>]조합원 총회 [<input type="checkbox"/>]대의원 총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이사회 ※ 중복 표시 가능	



임원 현황	직위	성명	경력	직원 겸직 여부
	이사장	최영열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이사장	○
	이사	박인향	희망나래일터 원장	○
	이사	송만숙	아라요양병원 행정부원장 등	×
	이사	임혜영	리디아공방 대표	×
	이사	이춘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 부회장	×
	이사	배인호	발달장애인 부모	×
	이사	김양진	사)자폐인사랑협회제주지회 이사	×
	이사	김진희	(주)스타치 대표	×
	이사	변유정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 사무국장	○
	감사	안형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	×
	감사	강석반	강석반세무사무소 대표	×

조합원 현황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계
	0명	0명	22명	0명	75명	97명

직원 현황	성별	남성	49명	여성	31명	계	80명
	고용형태	정규직	69명	비정규직	11명	계	80명
	취약계층고용	취약계층	42명	비취약계층	38명	계	80명

지역사회 기여실적	연월일	주요 내용
	2021. 01 ~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주간보호시설(희망나래활동센터,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운영 - 장애인공동생활가정(희망나래공동체) 운영 -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 지역사회기관 후원금 전달(13회)

해당 연도 사업 결과 (* 해당 내용만 작성. 다만, 혼합형은 해당 내용을 모두 작성)

①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판단기준: 서비스 공급 비율)

구 분	사회서비스 공급 (인원수/시간/회)	
	해당 연도 계획	해당 연도 실적
총 계 (A)	95,880시간	105,940시간
취약계층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센터 : 36,800시간 (230일×8시간×20명=36,800시간) -공동체 : 9,000시간 (200일×15시간×3명=9,000시간) -동백주간활동센터 :40,480시간 (230일×8시간×25명=46,000시간) -희망나래일터 : 9,600시간 (200일×6시간×8명=9,60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센터 : 33,120시간 (230일×8시간×18명=33,120시간) -공동체 : 4,500시간 60일×15시간×5명=4,500시간 -동백주간활동센터 :51,520시간 (230일×8시간×28명=51,520시간)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 16,800시간 240일×1시간×70명=16,800시간
기 타		
취약계층비 (C=B/A)(%)	100%	100%
첨부서류	1. 서비스 공급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취약계층 증명서류(①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 증명서 등 ②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③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취약계층 고용형 (판단기준: 인건비 / 직원수 비율 중 택일)

구 분	인건비 (원)		직원수 (명)	
	해당 연도 예산	해당 연도 결산	해당 연도 계획	해당 연도 실적
총 계 (A)			82	80
취약계층 (B)			43	42
기 타			39	38
취약계층 비율 (C=B/A)(%)			52.4%	52.5%
첨부서류	1. 전체 직원 및 취약계층 직원의 명단(생년월일 포함), 직원별 인건비 지출 명세 2. 취약계층 증명서류(①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 증명서 등 ②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③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2021년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성과

1. 설립목적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는 조합원 의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활동을 통하여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게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환경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2. 사명과 비전

미션	발달장애인의 평생파트너,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나래		
비전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의 역량 강화	발달장애인의 일할 기회와 일자리 확보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성장
핵심가치	협동 서로 함께 힘을 합쳐 실천	성장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실천	평등 누구나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게 실천

3. 2021년도 슬로건

슬로건	협동의 큰 힘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나래 2021
-----	----------------------------------

4. 2021년 사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1. 3기 임원 선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임 임원에 따른 변화 : 체계, 운영 • 성장 방향에 대한 조합원 요구
2. 희망나래 복합공간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된 사업 운영 기반 조성 • 커뮤니티 공간 내 사업 구상
3. 조합의 양적 성장으로 사회적 역할 및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 영역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 조합 활동 자발적 참여

5. 2021년도 중점추진 사항

-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동의 힘으로 희망나래 복합공간 건립
- 희망나래활동센터 이전으로 발달장애인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 발달장애인 새로운 직무개발을 통해 일자리 창출
-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통해 장애인이 보통의 삶 지원

6. 2021년도 사업 목표

사업목표	성과
① 시민자산화 모델 구축(희망나래 복합공간 건립)	2021.12.31. 준공 완료
② 조합원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조합의 역량 강화	총회 2회, 조합원 교육 2회 실시
③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신규 직무개발	희망나래TV 개국, 미디어카페 준비
④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발달장애인이 보통의 삶 지원	근로장애인 제주형 생활임금 지급
⑤ 혁신사회복지시설운영을 통한 공공성 강화	서비스 이용자 수 390명

7. 주요사업일지

- 01.27 법인 및 소속기관 자체 감사 실시
- 02.08. 제1차 이사회 회의 개최
- 02.16 희망나래 조합원 정기총회 실시
- 02.17 제10차 건립추진위원회 회의 개최(건설공사 업체 선정의 건)
- 02.26 제11차 건립추진위원회 회의 개최(건설공사 업체 지정의 건)
- 02.26 제2차 이사회 회의 개최
- 03.12 희망나래복합공간 착공식
- 04.09~10 굿리더연수(법인 소속기관 원장, 사무국장 등 8명)
- 05.12 기관방문 충북부모연대 벤치마킹 (사업공유 및 안내)
- 05.14 제12차 건립추진위원회 회의 개최(설계 변경의 건)
- 05.27 제1차 조합원교육(주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지원주택, 강사: 조준호대표)
- 06.15 희망나래 법인 소속기관 전직원 교육
- 06.18 제1회 제주를 밝히는 사회적가치 실현 대상 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최우수상 선정
- 06.22 희망나래 미디어공동체 리빙랩 워크숍(한라대, 김동만교수님)
- 06.23 제3차 이사회 회의 개최
- 06.28~29 희망나래 미디어공동체 ‘가치팡’ 벤치마킹(서울지역, 1박2일)
- 07.12 제4차 이사회 회의 개최
- 07.21 2021년도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임시총회(3기 임원 선출)

- 08.06 제13차 건립추진위원회 회의 개최(건립기금 모집 방안의 건)
- 09.01 발달장애인의 터전, 희망나래복합공간 ‘시민자산화’프로젝트 클라우드 펀딩 진행
- 09.30 공익법인 재지정(기획재정부, 2021.01.01.~2026.12.31.)
- 10.13 제5차 이사회 회의 개최
- 11.13 조합원 토닥토닥 패밀리데이 진행(일출랜드)
- 12.01 제2차 조합원 교육 실시(주제:장애인 탈시설 자립 지원 로드맵의 방향, 강정배센터장)
- 12.07 2021 사회적경제기업 클라우드펀딩 우수상 수상(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12.31 희망나래복합공간 준공

7. 세부사업실적

사업 분류	세부사업명	사업 대상	목표	실적	추진 율	사업내용	사업효과
1. 기능 보강 사업	희망나래 복합공간 건립공사	법인	1건	1건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 : 시민자산화 모델 구축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2348-5 (부지면적 1,025㎡) ○규모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811,89㎡, 신축 ○용도 : 노유자시설(다목적실, 희망나래활동센터), 제2종근린생활시설(복합공간) ○공사기간 : 3/15 ~12/31 ○설계계약 : 건축사사무소 반석건축(대표:문석준) ○공사계약 : (주)영도종합건설(대표:고영두) ○감리계약 : 건축사사무소 반석건축(대표:문석준) ○소방감리계약: (주)호승엔지니어링(대표:강봉직) ○착공식 : 3/12 ○건물번호 : 구산동길 15 ○준공완료 : 12/31 ○법인사무소, 희망나래활동센터 이전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480명 시민의 힘으로 공유자산을 만듦으로 임대료 부담 없이 발달장애인들에게 쾌적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됨. ○시민자산화 모델의 완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자부심과 소속감 향상의 기회가 됨. ○조합원 및 지역주민들에게 커뮤니티 공간 제공. ○희망나래 신규사업 ‘희망나래 미디어카페’ 공간을 확보함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신규직무 개발 및 일자리 확대에 기여함.
2. 조합 행사 및 조합 원 관리	조합원 가족한마당	조합원 및 가족	1회	1회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 : 조합원의 참여로 조합원 간 화합과 협동심 고취 ○일시 : 11/13(토) ○내용 : 조합원 토닥토닥 패밀리데이 실시(체험, 힐링, 충전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예방으로 09시~14시 시간 별 사전 참가 신청을 받고 진행하였음. ○스카프 천연염색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가족 간 화합, 힐링과 성취감을 느끼는 기회가 됨
	희망나래복 합공간 준공식 및 송년행사	조합원 및 이용장 애인 가족	2회	2회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 : 조합원의 참여로 조합원간 화합과 협동심 고취 ○일시 : 3월/12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망나래복합공간 착공식을 통해 지역사회 내 시민자산화 모델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음. ○발달장애인의 새로운 직

사업 분류	세부사업명	사업 대상	목표	실적	추진 율	사업내용	사업효과
						-희망나래복합공간 착공식 (3/12) -희망나래TV개국(12/23)	무 개발 및 일자리 창출 ○특화된 콘텐츠 개발로 희망나래 사업홍보 효과 확대 및 조합원들의 커뮤니티공간 구성 등 소속감 및 자부심 향상의 기회가 됨.
	조합원 상조사업	조합원	12회	6회	수시	○목표 : 조합원의 참여로 조합원간 화합과 협동심 고취 ○일시 : 1월~12월 ○내용 -조합원 및 가족의 상조사항 발생 시 상조금 지급과 더불어 축하 및 위로	○축하화환 및 축의금 전달과 축하(1회), ○근조화환 및 조의금 전달과 위로(5회) ○사무실 개업 축하화환 전달 및 축하(2회) ○조합원 간의 상조사업 참여로 소속감 향상의 기회가 됨
	발달장애인 부모 자조모임	조합원 중 발달장애 인 부모	5회	5회	100	○목표 : 조합원의 참여로 조합원 간 화합과 협동심 고취 ○일시 : 3월~11월 ○내용 -3/30(화) 디쉬가든만들기 (20명) -5/25(화) 오라올렛길 걷기 (14명) -7/27(화) 쿨트가방만들기 (16명) -9/28(화) 천연세제만들기 (16명) -11/30(화) 천연세제만들기 (17명)	○총 5회, 83명 참석 ○참여 조합원의 의견에 따라 주제 선정 및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체험 프로그램 실시 ○정기적인 자조모임을 통해 장애인 부모들 간의 지지·격려의 장을 마련하고 에너지 충전의 기회를 제공함. ○자조모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법인 사무실 방문 등 조합의 사업내용 등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기회가 되었음
3. 역량 강화 사업	조합원교육	조합원	2회	2회	100	○목표 : 조합 구성원의 멘버십 강화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 향상을 ○일시 : 5/27(목),12/1(수) ○내용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지원주택(조준호대표), 장애인 탈시설 자립 지원 로드맵의 방향(강정배센터장)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탈시설지원 로드맵 등 현재 장애인 패러다임의 방향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음. ○장애자녀의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 설정의 기회가 되었음.

사업 분류	세부사업명	사업 대상	목표	실적	추진 율	사업내용	사업효과
	임원연수	이사, 시설장, 사무국장 등	1회	1회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 : 조합 구성원의 멘버십 강화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 향상을 ○일시 : 6/28~29 ○내용 : 서울지역 미디어 제작소 벤치마킹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등 서울시 소재 기관 및 단체 5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장애인의 신규 직무 개발 및 미디어사업 준비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되었음. ○희망나래 미디어제작소 '가치팡' 사업의 계획을 시작하며 참여한 임원 구성원의 결의를 다지는 기회가 되었음.
	신입 직원교육	신입 직원교육 미이수 자	1회	1회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 : 조합 구성원의 멘버십 강화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 향상을 ○일시 : 10/28(목) ○내용 -신입직원교육 15시간 이수 -희망나래 미션 비전, 협동조합의 이해 -산하기관의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및 실습 -취업규칙, 운영규정 등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망나래의 핵심가치, 사업내용, 운영규정, 취업규칙 등을 습득하는 기회가 되었음. ○본인이 속한 기관을 동료들에게 직접 소개함으로 기관의 연혁, 사업내용을 숙지하는 기회가 되었음. ○신규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소통하며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일원으로 소속감 증진의 기회가 되었음.
	전체 직원교육	전직원	1회	1회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 : 조합 구성원의 멘버십 강화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 향상을 ○일시 : 6/15(화) ○내용 : -휴먼북라이브러리(강사:최영열대표) -직원 멘버십 및 역량강화 교육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직원의 참여와 조별토론 등 법인 소속기관 내 직원들과 소통의 기회 뿐만아니라 친밀감을 나누는 기회가 되었음. ○희망나래 창립 시 기대감과 희망나래 대표의 사명감을 들으며 각자 생각과 시각의 전환 등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음.
	굿리더연수	시설장, 사무국장, 팀장	1회	1회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 : 조합 구성원의 멘버십 강화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 향상을 ○일시 : 4월 9일~10일 ○내용 -조직운영 전반에 관한 워크샵 -기관의 협동 등 조직 강화를 위한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망나래 소속기관 리더들 간의 소통과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었음. ○희망나래복합공간 설립과 더불어 미래의 사업방향을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음.

사업 분류	세부사업명	사업 대상	목표	실적	추진 율	사업내용	사업효과
4. 조직 운영 사업	총회 개최	조합원	2회	2회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 :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 의결 ○일시 : 2월16일 / 7월21일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총회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의 승인,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시총회 : 3기 임원 선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합원 총회를 통해 2020년 조합의 사업결과 및 2021년 사업계획 등 조합의 운영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하였음. ○희망나래 제3기 임원 선출 및 등기 완료. (이사: 최영열, 김양진, 김진희, 박인향, 배인호, 변유정, 송만숙, 이춘선, 임혜영 9명, 감사: 강석반, 안형건)
	이사회 운영	이사	4회	6회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 :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 의결 ○일시 : 2~12월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망나래 사업을 공유하고 논의, 심의, 의결함. ○희망나래복합공간 건립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분위기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2021년 제1회 제주를 밝히는 사회적가치 실현 대상 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최우수상 선정 등 사업추진에 원동력이 되고 있음.
	소속기관 간부회의	원장, 사무국장, 팀장 등	24회	24회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 :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 의결 ○일시 : 매일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 매일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자료 제출 등 -원장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월 소속기관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음. ○간부회의를 통해 희망나래 추진사업 방향 등 협동과 참여, 의지를 다지는 기회가 되고 있음.
	인사위원회	인사위원	15회	15회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 : 인사임용 등 인사 관련에 필요한 사항 심의 의결 ○일시 : 필요 시 ○내용 : 직원 인사에 관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직원 임용 15명 ○법인 내 인사발령 1명 ○소속기관 내 직원의 복지 사항 등을 공유하며 근로 환경 개선방향을 고민하

사업 분류	세부사업명	사업 대상	목표	실적	추진 율	사업내용	사업효과
						<p>전반적인 사항 심의·의결</p> <p>-직원 채용, 승진, 인사이동에 관한 사항</p> <p>-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p>	는 기회가 되고 있음.
5. 외부 지원 사업	희망나래 미디어 제작소 '가치팡'	성인발 달장애 인	8명	9명	113	<p>○목표 :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신규 직무개발</p> <p>○일시 : 5월~12월</p> <p>○내용</p> <p>-인규베이팅(대상자선정, 지역네트워크운영, 인프라 구축 등)</p> <p>-미디어교육, 콘텐츠 개발, 영상촬영, 가치팡 방송국 개국 등</p> <p>○지원 :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p>	<p>○발달장애인의 신규직무 디지털 일자리 개발(영상 촬영, 특화 콘텐츠개발, 희망나래 미디어 제작소 '가치팡' 방송국 운영 등)</p> <p>○희망나래TV 개국으로 지역사회 내 희망나래 인지도 향상</p> <p>○지역사회 커뮤니티 공간(카페형 오픈 스튜디오) 조성으로 신규사업 운영 예정임.</p>
6.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발달 및 뇌병변 장애인	300 명	300 명	100	<p>○목표 :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정책대상 장애인의 보통의 삶 지원</p> <p>○일시 : 1월~12월</p> <p>○내용</p> <p>-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개발(세미나, 벤치마킹, 홍보사업, 인력사업단 운영 등)</p> <p>-지원주택 및 행복플래너(코치) 운영사업</p> <p>-이동지원사업 '누리카' 운영</p> <p>-스마트 홈 케어 서비스를 통한 덕내 안생생활 지원</p> <p>-영양밀반찬지원사업 당신을 위한 만찬 '당신만'(뇌병변장애인 40가구, 총40회 지원)</p> <p>-개인상담 및 주말여가지원사업, 가족테마여행</p> <p>-공동모금회와 함께 하는 돌봄나눔터 운영사업</p>	<p>○지역사회 내 300명의 발달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제(1,802회)</p> <p>○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 개발 운영에 핵심적 역할 수행</p> <p>○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 의료, 돌봄, 독립생활 지원서비스를 행복플래너에 의한 통합 제공</p> <p>○IoT(사물인터넷) 기반으로 가정 내 안심생활 지원 등 응급안전망 구축</p> <p>○돌봄나눔터 운영사업을 통해 돌봄 부담 완화.</p>

사업 분류	세부사업명	사업 대상	목표	실적	추진 율	사업내용	사업효과
7. 시설 운영 사업	희망나래 활동센터	센터 이용장 애인	20명	22명	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 : 혁신사회복지시설운 영을 통한 공공성 강화 ○일시 : 1월~12월31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간보호사업(일상생활지원, 여가취미활동, 교육활동, 작 업활동, 지역사회활동 등) -가족 및 장애인 지원사업 (가족상담, 부모회의 및 교 육, 개별지원계획 수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인원 : 20명 ○이용장애인 3명 고용전환 ○자립활동, 사회활동, 정 서활동, 작업활동, 특별 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외부지원사업을 통해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을 진행함으로써 여가활동 및 자립생활 능력을 습득 하는 기회가 되었음.
	희망나래 공동체	공동체 이용장 애인	3명	4명	1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 : 혁신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통한 공공성 강화 ○일시 : 1월~10월 ○내용 : 서비스 및 프로그 램 지원사업(개별 지원계 획 수립, 자립생활지원, 여가지원, 트레킹, 공동 모금회 사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인원 : 4명 ○이용자권리, 개별서비스 계획 수립, 재활프로그 램, 자기결정프로그램, 특성화프로그램 등 진행 ○자립생활의 능력 향상. ○설립목적에 따른 시설 운 영 환경 변화로 11월 1일 폐지 신고
	희망나래 일터	근로장 애인 및 훈련장 애인	40명	43명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 : 혁신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통한 공공성 강화 ○일시 : 1월~12월31 -장애인 보호고용(직업상 담, 직업평가, 개별화직업 지원계획수립 등) -프린팅 명함, 책, 포스터 등 다양한 인쇄관련 아이 템 제작 -Gift판촉물, 기념품, 답례 품, 사은품, 홍보용품 등 제작판매 -재활프로그램(건강한 행복 프로그램, 마주보기 프로 그램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장애인 : 40명 ○일반사업장으로 전이:3명 ○매출 : 1,326,833천원 ○근로장애인 제주형생활임 금 지급(4시간 근로, 월 106만원 지급) ○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시 설 재지정(인쇄물, 쇼핑 백, 문서화일, DM발송, 현수막, 판촉물)을 통해 사업 매출 향상을 통한 직무개발 및 장애인 일자 리 확대 기반 마련 ○사업유형 근로사업장으로 변경, 근로장애인 40명으 로 정원 변경 등 일자리 확대 ○미디어교육 참여 등 신규 직무 개발 및 잠재적 능 력 발굴 등

사업 분류	세부사업명	사업 대상	목표	실적	추진 율	사업내용	사업효과
	제주시동백 주간활동센 터	센터 이용자 애인	30명	30명	100	<p>○목표 : 혁신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통한 공공성 강화</p> <p>○일시 : 1월~12월</p> <p>○내용</p> <p>-주간보호사업(일상생활지원, 여가취미활동, 교육활동, 작업활동, 특별활동 등)</p> <p>-가족 및 장애인 지원사업(가족상담, 부모회의 및 교육, 개별지원계획 수립 등)</p>	<p>○이용인원 : 30명</p> <p>○자립활동, 사회활동, 정서활동, 작업활동, 특별활동, 특화사업 등 프로그램 운영</p> <p>○지역사회 동반성장 활동으로 진행한 마을길 청소, 해안가 정화활동은 지역사회 소통 및 공헌의 기회가 되었음.</p> <p>○방가 후 반을 편성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 주고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p>
8. 홍보 사업	희망나래 홍보물 발행	지역사 회 기관 등	2회	2회	100	<p>○목표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p> <p>○일시 : 2월, 12월</p> <p>○내용</p> <p>-법인 5주년 기념 책자 제작 및 배부</p> <p>-법인 소개 브로슈어 제작 및 배부</p>	<p>○법인 5주년 기념 책자 제작을 통해 5년간 소속기관 사업내용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음.</p> <p>○매월 법인 및 산하기관 카드뉴스 발행으로 사업 내용 홍보 및 공유</p>
	지역사회 홍보	지역사 회 기관 등	12	12	100	<p>○목표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p> <p>○일시: 1월~12월</p> <p>○내용 : 밴드, 홈페이지, 언론홍보, SNS 활용을 통한 홍보 및 정보제공, 웹진 발행 등</p>	<p>○언론홍보, 희망나래밴드, 홈페이지, SNS(페이스북 등)활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관의 사업 및 가치를 공유함.</p>
9. 자원 연계 사업	후원사업	후원자	350, 000 천원	269, 257 천원	76.9	<p>○목표 : 자원 발굴을 통한 더불어 성장 기반 마련</p> <p>○일시 : 1월~12월</p> <p>○내용</p> <p>-매월 후원자 관리 및 모집</p>	<p>○신규후원자 38명 개발 등 총 277명 정기후원자 관리 및 후원금 마련(46,630천원).</p> <p>○복합공간 건립 지정후원</p>

사업 분류	세부사업명	사업 대상	목표	실적	추진 율	사업내용	사업효과
						-CMS 관리 -희망나래복합공간 건립기 금마련 사업 -후원자 감사 메시지 발송 -2020년 후원자료 전송(국 세청) -2020년 후원금 수입 및 사 용내역 공고(홈페이지)	자 개발 및 기금 마련 (240명, 222,627천원) ○오마이컴퍼니 진행으로 복합공간 건립 기금 마련 (102명, 28,000천원) ○후원개발을 통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안정적 운영 지원 등 성장 기반 마련
	네트워크	지역사 회 유관기 관	4회	4회	100	○목표 : 자원 발굴을 통한 더불어 성장 기반 마련 ○일시 : 1월~12월 ○내용 -협회, 협의회 등 활동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을 통한 사업 진행	○지역사회 내에 있는 자원 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 여 자원을 발굴하고 공유 를 통해 네트워크 형성함 등 사회경제 활동 강화.
	공익활동지 원	업무협 약 기관	2건	2건	100	○목표 : 자원 발굴을 통한 더불어 성장 기반 마련 ○일시 : 1월~12월 ○내용 : 지역사회 취약계층 을 위한 사업 후원 공동모금회 착한가게 지원	○지역사회기관 및 유관기 관에 후원금 및 후원물 품 전달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적가치 확산 등 기관 의 사회적 책임 완수
10. 수익 사업	원예사업	지역사 회 기관 등	18,0 00천 원	11,6 31천 원	64.6	○목표 : 자립기반 마련 ○일시 : 1월~12월 ○내용 : 꽃배달서비스, 원 예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수익 창출	○원예치료 및 근조화환, 축하화환, 썬화환, 관엽 화분 등 원예사업 진행. ○원예치료를 통한 사회서 비스 진행으로 사회적 가 치 실현
	판촉물사업	지역사 회 기관 등	12,0 00천 원	20,3 43천 원	169	○목표 : 자립기반 마련 ○일시 : 1월~12월 ○내용 : 희망나래 캐릭터 '나래' 관련 GOODS 상 품개발 및 판매를 통한 수익창출	○사회적기업 실적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판촉물 사 업 등을 홍보하여 판매 ○희망나래 군즈 상품 개발 을 통해 기관 이미지 및 발달장애인의 인식 개선 고취

2021년도 사업결산 보고서

※ 별첨 첨부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제 3호 의안
당기 이익잉여금 처리 승인의 건

제의 관계조항 : 정관 제33조 제5항

주문사항 : 2021년도 당기 이익잉여금 처리(안)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오.

제 4호 의안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승인의 건

제의 관계조항 : 정관 제33조 제9항

주문사항 : 2021년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의 건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2021년 탈퇴 조합원 명단 및 가지급 금액

NO	이름	생년월일	출자좌수	금액	탈퇴일	탈퇴사유
1	김○○	70.12.10	30	3,000,000	2021.02.19	개인사유
2	김○○	92.04.06	100	10,000,000	2021.03.31	사직
3	문○○	92.05.09	70	7,000,000	2021.02.28	사직
4	김○○	79.03.17	30	3,000,000	2021.03.31	사직
5	조○○	76.03.16	130	13,000,000	2021.05.20	사직
6	강○○	77.07.08	30	3,000,000	2021.05.31	사직
7	문○○	73.01.21	30	3,000,000	2021.07.15	개인사유
8	오○○	70.04.30	60	6,000,000	2021.12.02	개인사유
9	박○○	69.12.03	30	3,000,000	2021.12.08	개인사유
10	변○○	65.11.01	80	8,000,000	2021.12.31	개인사유
11	김○○	71.06.11	0	0	2021.12.31	개인사유
12	김○○	87.11.13	60	6,000,000	2021.12.31	사직
13	현○○	63.03.05	30	3,000,000	2021.12.31	개인사유
14	김○○	59.01.17	30	3,000,000	2021.12.31	개인사유
합 계			710	71,000,000		

제 5호 의안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조합원 재가입 규약 개정 의 건

제의 관계조항 : 정관 제33조 제4항

주문사항 :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조합원 재가입 규약 개정의 건
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조합원 재가입 규약 개정(안)

1. 제안이유

○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조합원 재가입 규약 개정(안)을 심의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합원 재가입 규약 일부 개정

현행	신규	비고
제3조(재가입 절차) 조합을 탈퇴 후 재가입 가능 기간이 지난 후 재가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가입신청서와 조합원 <u>3인 이상</u> 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조합에 재가입하는 조합원은 가입 전 사전 조합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조(재가입 절차) 조합을 탈퇴 후 재가입 가능 기간이 지난 후 재가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가입신청서와 <u>이사 1인과 조합원 1인 이상</u> 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조합에 재가입하는 조합원은 가입 전 사전 조합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재가입 조합원 출자금을 정관 제 18조(출자)에 근거하여 변경함.
제4조(탈퇴 후 재가입 시 출자금) 조합을 탈퇴한 후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u>반환출자금 전액을 출자금으로 납부</u> 하여야 한다.	제4조(탈퇴 후 재가입 시 출자금) 조합을 탈퇴한 후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u>30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0원으로 한다.</u>	

<협동조합 정관·규약·규정의 개정 절차>

- 정관 개정 : 총회에서 총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쳐 변경신고(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변경인가신청)
- ※ 정관의 변경은 신고 또는 변경인가를 거쳐야 효력이 있습니다.
- 규약 개정 : 총회에서 총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 의결
- 규정 개정 : 이사회에서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 찬성 의결

제 6호 의안

2022년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제의 관계조항 : 정관 제33조 제4항

주문사항 : 2020년도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2022년도 사업계획서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2022년 사회적협동조합등 사업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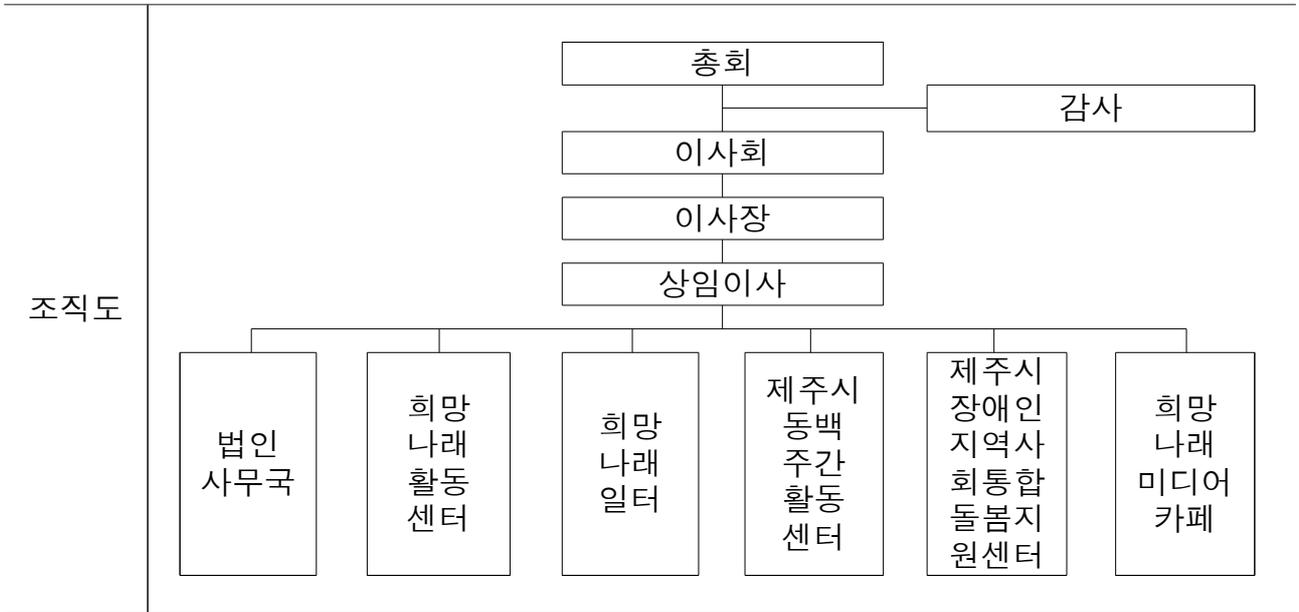
(제1쪽)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설립연월일 2015년 11월 3일	업태 서비스업, 도소매, 서비스
	인가번호 보건복지부 제79호	사업자등록번호 695-82-00070
	연합회 가입 현황(* 사회적협동조합만 작성)	
	주소	주사무소 제주시 구산동길 15(아라일동) 제1 지사무소 제주시 구산동길 15(아라일동) (희망나래활동센터) 제2 지사무소 제주시 중앙로 175, 3층(이도일동) (희망나래일터) 제3 지사무소 제주시 조천읍 북촌2길 76-5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 제4 지사무소 제주시 중앙로 273, 101호(일도이동)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센터)
	출자금	97명/1,506백만원
	주 사업 유형	[]지역사업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취약계 층 고용형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
조직 연혁	2015. 07. 18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창립총회 개최공고
	2015. 07. 27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창립총회 개최
	2015. 11. 03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설립인가(보건복지부)
	2015. 11. 19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희망나래활동센터 인가(제주시)
	2016. 06. 17	희망나래활동센터 개원식
	2016. 06. 22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2016. 09. 05	법인사무소 이전(제주시 중앙로 248, 아산빌딩 4층)
	2016. 10. 01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 선정
	2016. 12. 27	사회적기업 인증
	2017. 01. 12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희망나래공동체 인가
	2017. 03. 29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선정
	2017. 05. 04	장애인보호작업장 희망나래일터 인가(제주시)
	2017. 06. 30	부총리 표창장 수상
	2017. 09. 26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본점 및 지점 이전 등록
	2017. 11. 15	희망나래일터 개원식
	2017. 12. 06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인쇄물, 쇼핑백)
2018. 04. 05	2018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선정	

2018. 04. 12	2018년 장애인고용촉진대회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
2018. 07. 25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제2기 임원 선출
2018. 11. 30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추가 지정(DM발송, 문서파일류)
2018. 12. 14	14가지 희망 출판기념회 및 문화예술사업보고회 개최
2019. 01. 21	공공형주간보호시설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 위탁 체결(제주시)
2019. 07. 16	희망나래 커뮤니티 아트센터 선정(제주삼다수)
2019. 08. 23	제주형 커뮤니티케어 '제주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2019. 04. 15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 개원식
2019. 10. 02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본점 이전 등록(제주시 중앙로 273, 101호)
2019. 11. 04	희망나래일터 제2사무소 개소식
2019. 11. 28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 개소식
2019. 12. 16	제5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최우수상 수상
2020. 04. 02	제주지역 사회적가치 측정 연구 지원사업 선정
2020. 04. 29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2020. 04. 29	희망나래 복합공간 건립위원회의 개최
2020. 11. 21	제주사회적경제기업 우수사례 선정
2020. 12. 24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6종목)
2021. 03. 12	희망나래 복합공간 착공식
2021. 06. 18	제1회 제주를 밝히는 사회적가치 실현대상 사회적경제기업 최우수상 수상(제주특별자치도)
2021. 09. 01	발달장애인의 터전, 희망나래복합공간 '시민자산화'프로젝트 클라우드 펀딩 진행
2021. 12. 07	2021 사회적경제기업 클라우드펀딩 우수상 수상(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1. 12. 31	희망나래 복합공간 준공

설립 목적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는 조합원의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게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환경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

의사결정기구	[<input checked="" type="checkbox"/>]조합원 총회 [<input type="checkbox"/>]대의원 총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이사회 ※ 중복 표시 가능
--------	---



임원 현황	직위	성명	경력	직원 겸직여부
	이사장	최영열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이사장	○
	이사	박인향	희망나래일터 원장	○
	이사	송만숙	아라요양병원 행정부원장	×
	이사	임혜영	리디아공방 대표	×
	이사	이춘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 부회장	×
	이사	배인호	전) 제주지방항공청	×
	이사	김양진	사)자폐인사랑협회제주지회 이사	×
	이사	김진희	(주)스타치 대표	×
	이사	변유정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 사무국장	○
	감사	강석반	강석반 세무사 사무소	×
	감사	안형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	×

조합원 현황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계
	명	명	22명	명	75명	97명

직원 고용 계획	성별	남성	50명	여성	35명	계	85명
	고용 형태	정규직	74명	비정규직	11명	계	85명
	취약계층 고용	취약계층	45명	비취약계층	40명	계	85명

해당 연도 사업계획 (* 해당 내용만 작성)

①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판단기준: 사회서비스 공급 비율)

구 분	사회서비스 공급 (인원수/시간/회)	
	직전 연도 실적	해당 연도 계획
총 계 (A)	105,940시간	1,800명
취약계층 (B)	-활동센터 : 33,120시간 (230일×8시간×18명=33,120시간) -공동체 : 4,500시간 60일×15시간×5명=4,500시간 -동백주간활동센터 :51,520시간 (230일×8시간×28명=51,520시간)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 16,800시간 240일×1시간×70명=16,800시간	-희망나래 활동센터 : 240명 20명×12월=240명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 : 360명 30명×12월=360명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 1,200명 100명×12월=1,200명
취약계층 비율 (C=B/A)(%)	100	

② 취약계층 고용형 (판단기준: 인건비 / 직원수 비율 중 택일)

구 분	인건비 (원)		직원수 (명)	
	직전 연도 결산	해당 연도 예산	직전 연도 결산	해당 연도 예산
총 계 (A)			80	85
취약계층(B)			42	45
기 타			38	42
취약계층 비율 (C=B/A)(%)			52.5%	52.9%

1. 설립목적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는 조합원 의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활동을 통하여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게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환경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2. 사명과 비전

미션	발달장애인의 평생파트너,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나래		
비전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의 역량 강화	발달장애인의 일할 기회와 일자리 확보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성장
핵심가치	협동	성장	평등
	서로 함께 힘을 합쳐 실천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실천	누구나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게 실천

3. 2022년도 슬로건

슬로건	협동의 큰 힘으로 새로운 미래를 함께하는 희망나래 2022
-----	----------------------------------

4. 2022년 사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1. 희망나래 복합공간 신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된 사업 운영 기반 조성 희망나래 미디어 카페 운영
2. 희망나래일터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고용안정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내실화
3. 조합의 양적 성장으로 사회적 역할 및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 영역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조합 활동 자발적 참여

5. 2022년도 중점추진 사항

-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동의 힘으로 희망나래 미디어카페 수익모델 창출
- 희망나래활동센터 이전으로 발달장애인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 희망나래일터 신축으로 발달장애인 새로운 직무개발을 통해 일자리 창출
-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통해 장애인이 보통의 삶 지원

6. 2022년도 사업 목표

- 시민자산화 모델 구축(희망나래 복합공간 운영)
- 조합원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조합의 역량을 강화한다.
-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신규 직무개발
-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발달장애인이 보통의 삶 지원
- 혁신사회복지시설운영을 통한 공공성 강화

7. 조합원 및 출자금 현황

- 조합원 현황 (단위 : 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7	53	62	84	90	104	92

- 출자금 현황 (단위 : 천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70,000	179,000	253,000	362,000	383,000	1,463,000	1,560,000

8.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희망나래 활동센터	희망나래 일터	제주시 동백주간 활동센터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	법인	합 계
7	12	9	15	1	44

9. 이용장애인 현황

희망나래 활동센터	희망나래 일터	제주시 동백주간 활동센터	제주시장애인 지역사회통합 돌봄지원센터	합 계
20	40	30	300	390

10. 사업계획

사업분류	사업목표	세부사업명	목표	예산 (천원)	사업내용
1. 기능보강 사업	시민자산 화 모델 구축	1-1. 희망나래 일터 신축	1건	1,563, 400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2348-5(부지면적 1,025㎡) ○규모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757.40 ㎡, 신축 ○용도 : 근린생활시설(인쇄 작업장, 희망 나래일터) ○공사기간 : 3월 ~ 11월 ○세부사업계획 : <별지 1>
2. 조합행사	조합원의 참여로 조합원간 화합과 협동심 고취	2-1. 조합원 가족한마당	1회	3,000	○일시 : 10월 ○대상 : 조합원 및 가족 ○내용 : 조합원 토닥토닥 패밀리데이 실시(체 험, 힐링, 충전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2-2. 희망나래복합 공간 준공식	1회	-	○일시 : 2월 15일(화) ○대상 : 조합원 및 후원자, 지역주민 등 ○내용 -희망나래복합공간 준공식 -제주도 최초 시민자산화모델 구축 -희망나래활동센터 이전 및 미디어 카페 오픈
3. 역량강화 사업	조합 구성원의 멤버십 강화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 향상	3-1. 신규조합원 교육	1회	-	○일시 : 3월 3일(목) ○대상 : 희망나래 소속기관 이용인 가족 및 종사자 ○내용 : 협동조합의 이해, 사회적협동조합 희 망나래 사업안내, 조합원 가입 절차 안내 등
		3-2. 조합원교육	2회	1,000	○일시 : 4월, 10월 ○대상 : 조합원 ○내용 : 조합 운영 및 사업 관련 교육
		3-3. 임원연수	1회	1,000	○일시 : 8월 ○대상 : 이사, 시설장, 사무국장 등 ○내용 : 사회적경제 조직, 사회복지관련 등 선 진 업체 벤치마킹

사업분류	사업목표	세부사업명	목표	예산 (천원)	사업내용
		3-4. 신입 직원교육	1회	-	○일시 : 7월 ○대상 : 신입 직원교육 미이수자 ○내용 -희망나래 미션 비전, 협동조합의 이해 -산하기관의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및 실습 -취업규칙, 운영규정 등 안내
		3-5. 전체 직원교육	1회	비예산	○일시 : 4월 ○대상 : 전직원 ○내용 : 직원 멤버쉽 및 역량강화 교육 진행
		3-6. 굿리더연수	1회	1,000	○일시 : 3월 ○대상 : 시설장, 사무국장, 팀장 ○내용 -조직운영 전반에 관한 워크샵 -리더쉽 강화를 위한 연수
4. 조직운영 사업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 의결	4-1. 총회 개최	2회	300	○일시 : 2월 24일(목) ○대상 : 조합원 ○내용 : 정기총회 개최(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 인,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의 승인, 탈퇴 조 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그 밖에 이사장 또 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4-2. 이사회 운영	4회	2,400	○일시 : 2월, 6월, 9월, 12월 ○대상 : 이사 ○내용 :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자산의 취득과 처분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 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4-3. 산하기관 간부회의	24회	-	○일시 : 1월 ~ 12월 ○대상 : 산하기관 원장, 사무국장, 팀장 등 ○내용 -간부회의 : 월1회,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등 -원장회의 : 필요 시, 법인 및 산하기관 사업 공유 및 주요사항 논의
		4-4. 인사위원회	10회	1,000	○일시 : 1월 ~ 12월 ○대상 : 인사위원 ○내용 : 직원 인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심

사업분류	사업목표	세부사업명	목표	예산 (천원)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의결 -직원 채용, 승진, 인사이동에 관한 사항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직원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등
5. 외부지원 사업	발달장애 인 일자리 창출 및 신규 직무개발	5-1. 희망나래 미디어 제작소 '가치팡'	10명	40,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1월 ~ 12월 ○대상 : 성인 발달장애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디어교육, 콘텐츠 개발, 영상촬영 등 -디지털변환사업 진행 -미디어카페 운영 -희망나래TV 운영 등 ○지원 :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부사업계획 : <별지 2>
	돌봄 지원을 통한 돌봄 부담 완화	5-2. 사랑의 열매 발달장애인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나눔터 운영사업	100명	18,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1월~ 12월 ○대상 : 발달장애인 ○내용 : 돌봄나눔터 운영사업 ○지원 :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부사업계획 : <별지 3>
	사회적 경제 청년혁신 활동가 육성지원	5-3.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회적경제 청년혁신 활동가 육성지원」 사업	3명	68,9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1월 ~ 12월 ○대상 : 청년일자리 참여자(만39세 미만)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디어 카페 수익 모델 창출 -컨텐츠 관련 영상 촬영 및 편집, 행사 콘텐츠 기획 및 운영, 발달장애인 직무교육 등 -신규 채용 1인당 인건비 월 1,687,500원 지원 ○지원 : 제주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세부사업계획 : <별지 4>
6.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정책 대상 장애인이 보통의 삶 지원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	300명	855,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1월 ~ 12월 ○대상 : 발달 및 뇌병변장애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개발(세미나, 벤치마킹, 홍보사업, 인력사업단 운영 등) -지원주택 및 행복플래너(코치) 운영사업 -이동지원사업 '누리카' 운영 -스마트홈케어 서비스를 통한 닥내 안심 생활 지원 -영양밀반찬지원사업 당신을 위한 만찬 '당신만'(뇌병변장애인 40가구, 총40회 지원) -개인상담, 부모자조모임 운영 등 -제주사랑의 열매와 함께 하는 돌봄나눔터 운영사업

사업분류	사업목표	세부사업명	목표	예산 (천원)	사업내용
7. 시설 운영사업	혁신사회 복지시설 운영을 통한 공공성 강화	희망나래 활동센터	20명	407,538	○일시 : 1월 ~ 12월 ○대상 : 센터 이용장애인 ○내용 -주간보호사업(일상생활지원, 여가취미활동, 교육활동, 작업활동, 지역사회활동 등) -가족 및 장애인 지원사업(가족상담, 부모회의 및 교육, 개별지원계획 수립 등)
		희망나래일터	40명	4,159,241	○일시 : 1월 ~ 12월 ○대상 : 근로장애인 및 훈련장애인 ○내용 -장애인 보호고용(직업상담, 직업평가, 개별화 직업지원계획수립 등) -프린팅 명함, 책, 포스터 등 다양한 인쇄관련 아이템 제작 -Gift판촉물, 기념품, 답례품, 사은품, 홍보용품 등 제작판매 -프로그램(건강한 행복프로그램, 마주보기 프로그램등)운영
		제주시동백주 간활동센터	30명	576,035	○일시 : 1월 ~ 12월 ○대상 : 센터 이용장애인 ○내용 -주간보호사업(일상생활지원, 여가취미활동, 교육활동, 작업활동, 특별활동 등) -가족 및 장애인 지원사업(가족상담, 부모회의 및 교육, 개별지원계획 수립 등)
8. 홍보사업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사회적 가치 확산	희망나래 홍보물 발행	2회	2,000	○일시 : 2월, 4월 ○내용 : 법인 소개 브로슈어 제작 및 배부
		지역사회 홍보	연중	-	○일시 : 1월 ~ 12월 ○내용 : 밴드, 홈페이지, 언론홍보, SNS 활용, 카드뉴스를 통한 홍보 및 정보제공
9. 자원연계 사업	자원 발굴을 통한 더불어 성장 기반 마련	후원사업	200,000천원	5,000	○일시 : 1월 ~ 12월 ○대상 : 후원자 ○내용 -매월 후원자 관리 및 모집 -CMS 관리 -희망나래일터 신축기금마련 사업 -후원자 감사 메시지 발송 -기부금 영수증 발행

사업분류	사업목표	세부사업명	목표	예산 (천원)	사업내용
		네트워크	4회	1,500	○일시 : 1월 ~ 12월 ○대상 : 지역사회 유관기관 ○내용 - 협회, 협의회 등 활동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 업무협약을 통한 사업 진행
		공익활동지원	2건	2,000	○일시 : 1월 ~ 12월 ○대상 : 업무협약 기관 ○내용 :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후원
10. 수익사업	자립기반 마련	판촉물사업	50,000 천원	30,000	○일시 : 1월 ~ 12월 ○내용 : 희망나래 캐릭터 '나래' 관련 GOODS 상품개발 및 판매를 통한 수익창출
		미디어카페 사업	150,00 0천원	70,000	○일시 : 2월 ~ 12월 ○내용 : 희망나래 미디어카페 운영을 통한 수 익창출(영상편집, 디지털변환, 카페 공간 임 대 등)

<별지 1>

1-1. 희망나래 일터 신축공사 계획(안)

- 사업 목적 : 법인 부지에 신축공사를 통해 근로장애인의 고용확대 및 훈련장애인의 맞춤형 훈련을 제공, 직업훈련 프로그램, 직무교육, 집합교육 등의 공간확보와 연간 임대료로 지출되는 56,896천원의 임대료 부담감을 해소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시설운영으로 이용장애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사업의필요성 :
 - 중증장애인 이용증가로 인한 공간 부족 : 희망나래일터는 2017년 5월 4일 개원 후 2017년 12월 기준 근로장애인 14명/ 2018년 12월 기준 근로장애인 21명, 훈련생 5명/ 2019년 12월 기준 근로장애인 31명/ 2020년 12월 기준 근로장애인 30명, 훈련장애인 7명/ 2021년 3월 기준 근로장애인 30명, 훈련장애인 8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상반기 내 훈련장애인 2명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에 있어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 사무소 통합으로 인한 시설운영의 효율성 증대 : 2017년 개원 후 연간 30%이상 이용장애인이 증가하여 2019년 11월 제2사무소 확장 개원 후 운영 중임. 신축공사를 통해 분리된 사무소를 통합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 훈련장애인의 훈련강화, 근로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직무훈련 및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함.
 - 임대사무실 비용부담 : 희망나래일터는 근로장애인 및 훈련장애인의 통근교육 및 지역사회 활용강화를 위해 2곳의 사무소가 제주시 내 중심지역(이도2동, 이도1동)에 위치하고 있어 사무소 임대료가 높은 상황으로 보증금을 제외하고 연간 56,896천원의 연세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으로 임대사무실의 비용부담이 높은 실정임.

○ 관련사진



임대사무실 1(중앙로 175)



임대사무실 2(중앙로 273)

- 사업의효과 :
 - 근로장애인의 고용 확대 및 훈련장애인의 이용 인원 증원을 통해 지역 내 중증장애인의 근로 기회 및 맞춤형 훈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직업재활시설의 맞춤형 설계를 통해 다양한 직무교육 및 훈련,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공간을

구축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매년 56,896천원의 임대료를 절감하여 더 많은 중증장애인들에게 직무훈련과 서비스를 강화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 사업추진일정 :

추진일정 사업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보조금 확정내시												
보조금 교부신청												
업체선정 및 계약												
공사착공 및 준공												

○ 사업 규모 :

용도별	사업규모	사업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814.95㎡ (246.4평)	1,478,400	569,243	569,243	339.914	246.4평× 6,000천원
지하1층(사무실, 식당, 재활상담실)	361.71㎡					
1층(작업장)	226.62㎡					
2층(작업장, 자원봉사자실)	226.62㎡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담방법	비고
1,478,400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339.914	법인전입금 사용	

■ 설 계 개 요

(M²)

구 분	내 용	
• 대 지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1동 2348-5번지	
• 용 도 지 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 대 지 면 적	공부상면적	463.00
	신청면적	463.00
	잔여면적	562.00
• 건 축 면 적	231.40	
• 연 면 적	1층	228.40
	2층	228.40
	소계	456.80
	지하1층	287.25
	합계	744.05
• 용적율산정연면적	456.80	
• 건 폐 율	49.97 %	법정 : 50%이하
• 용 적 율	98.66 %	법정 : 100%이하
• 조 경 면 적	해당없음	
• 주 차 대 수	5대	법정 : 5.23대 이상
•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 용 도	지하1층	노유자시설(지체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 규 모	지하1층 ~ 지상2층	
• 정 화 조	정화조(부패탱크방법/60인조) / 시오수맨홀연결	

■ 배치도



<별지 2>

5-1. 사랑의 열매 청년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소통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체 미디어 프로젝트「희망나래 미디어 제작소 ‘가치팡’」

1. 사업명 : 사랑의 열매 청년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소통 강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체 미디어 프로젝트 「희망나래미디어제작소 ‘가치팡’」

2.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

1) 사업 참여자 모집 전략

(1) 참여 대상 및 인원

핵심 참여자	제주시에 주소를 둔 경제적 자립을 원하는 청년발달장애인 10명 내외
주변 참여자	제주특별자치도 내 온라인 미디어 업체 및 스튜디오 업체 관계자, 홍보대행전문업체 이해관계자 등 70명 내외

(2) 참여자 선정 기준

- 제주시에 주소를 둔 경제적 자립을 원하는 발달장애인 10명 내외
- 본인의 참여 의지가 구체적이고 확실한 청년발달장애인
- 지역사회적응검사(Community Integration Skills-Assessment : CIS-A) 결과 평균이상인 발달장애인

(3) 참여자 모집 방안

- 도내 장애인 복지기관 및 단체 등 유관기관 홍보
- 홈페이지 및 SNS 홍보를 통한 모집
- 언론사 홍보를 통한 모집

2) 사업내용 및 사업 집행 전략

사업구분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및 시행방법	시행시기	목표
교육훈련 사업	대상자 모집	- 발달장애인관련 유관단체, 기관 공문발송 - 모집 관련 웹자보 제작 및 홍보 - 언론홍보 매체 활용	22.01~02	10명
	미디어교육 (초급)	- 전문 교육업체(강사) 및 커리큘럼을 활용한 교육 - 1인 미디어 스피치, 영상 촬영 Basic, 편집 프로그램 Basic	22.03~05	8회
	미디어교육	- 전문 교육업체(강사) 및 커리큘럼을 활용한 교육	22.06~09	10회

사업구분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및 시행방법	시행시기	목표
	(심화교육)	- 영상 촬영 교육 및 실습, 카드뉴스 제작 노하우		
	팀프로젝트	- 팀구성, 영상 촬영 및 편집 수행 - 프로젝트 수행 및 발표	22.08	1회
가치평 사업확대	Living Lab 워크숍	- 당사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참여 -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생활속 열린 실험 아이디어 워크숍	22.03	1회
	공동체미디어벤 치마킹	- 시청자미디어센터 벤치마킹(1박2일) - 지역공동체미디어지원사업 내용 및 성과 공유를 통한 콘텐츠 개발	22.04	1회
	희망나래TV 운영	-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현장의소리, 달려가는 방송국, 희망나래 브이로그 등) - 희망나래 TV 콘텐츠 업로드(주1회)	22.01~12	48건
	디지털 변환사업	- 디지털 데이터화 : 공공기관 등의 기록물 등 아날로그 형식의 정보와 문서를 디지털 방식으로 변환하여 수익모델 창출 - 도민대상 옛날 비디오테이프에 간직한 추억 재생 : 기존 아날로그 영상 기록물의 디지털 변환	22.01~12	200건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	- 오픈스튜디오 및 1인미디어실 운영 참여 - 발달장애인 근로계약체결(4명) - 채용연계형인턴십 운영(4명)	22.01~12	8명
	지역네트워크자 문회의	- 희망나래미디어제작소 지역 네트워크 구성 - 발달장애인관련 유관단체, 기관, 사회적경제조직 등으로 구성 - 정기적인 네트워크 회의 개최	22.01~12	4회
커뮤니티 공간조성	미디어 인프라 구축	- 영상장비 구축(빔프로젝트, 노트북 등) - 음향장비 구축(파워드믹서, 스피커, 마이크 등)	22.01	1회
	미디어카페 운영	- 희망나래 미디어 카페 오픈식 - 발달장애인 아티스트 공연 및 작품 전시 유치	22.03	상시
	홍보사업	- 체계적인 홍보전략 수립 및 실행 - 사업의 진행을 알 수 있는 카드뉴스 등 발행 - 지역사회에 홍보할 브로슈어 및 판촉물 등 제작	22.01~12	10회
	모니터링	- 참가자 모니터링 및 피드백 - 사업 만족도 조사	22.12	1회

<별지 3>

5-2. 사랑의 열매 발달장애인 주말돌봄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나눔터 운영사업

I

사업 개요

1. 대상 : 제주시에 주소를 둔 발달(지적·자폐성)장애인
2. 기간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3. 장소 :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및 지역사회 일대
4. 내용 : 돌봄나눔터 운영사업 및 주말여가활동 토요아트스쿨
5. 소요예산 : 금 18,000,000원정(금일천팔백만원정)
5.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II

사업 내용

□ 돌봄나눔터 운영사업

1. 돌봄나눔터 운영(개별활동 지원)

- 가. 대상 : 제주시에 주소를 둔 발달(지적·자폐성)장애인
- 나. 기간 : 2022년 3월~11월 (매주 월~금 13:00 ~ 17:00(공휴일 제외))
- 다. 장소 : 지역사회 통합돌봄 공유공간 ‘가치팡’
- 라. 소요예산 : 금 3,165,000원정(금삼백일십육만오천원정)
- 마. 이용절차 : 이용신청서 제출 이후 운영시간 내 자유롭게 이용
- 바. 수행방법
 - 이용자 수시 모집 및 상담을 통해 돌봄나눔터를 자유롭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이용자가 스스로 방문 및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 제공
 -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여러 종류의 감각교구, 도서구비 등을 통해 지적 호기심 충족 등 다양한 경험 및 개별활동 제공
 - 돌봄나눔터 운영일지 작성

2. 건강증진 프로그램(파크골프)

- 가. 대상 : 돌봄나눔터를 이용하는 발달(지적·자폐성)장애인 8명
- 나. 기간 : 2022년 4월 ~ 10월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 14:00~16:00, 총 12회)
- 다. 장소 : 소낭클럽 파크골프장(제주시 연동 1028) 또는 종합경기장 내 파크골프장
- 라. 내용 : 파크골프
- 마. 소요예산 : 금 2,800,000원정(금이백팔십만원정)
- 바. 수행방법
 - 프로그램 전문 강사 위촉
 - 3월 프로그램 사전 신청자 모집 후 이용자 8명 선정하여 프로그램 진행
 - 건강증진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일지 작성

3. 문화여가 프로그램(도예)

- 가. 대 상 : 돌봄나눔터를 이용하는 발달(지적·자폐성)장애인 8명
- 나. 기 간 : 2022년 4월 ~ 9월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14:00~16:00, 총 12회)
- 다. 장 소 : 지역사회 통합돌봄 공유공간 ‘가치팡’
- 라. 내 용 : 도예
- 마. 소요예산 : 금 4,320,000원정(금사백삼십이만원정)
- 바. 수행방법
 - 프로그램 전문 강사 위촉
 - 3월 프로그램 사전 신청자 모집 후 이용자 8명 선정하여 프로그램 진행하며, 돌봄나눔터 상시 이용자 또한 참여 가능
 - 문화여가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일지 작성

□ 주말여가활동지원

1. 토요일아트스쿨

- 가. 대 상 : 돌봄나눔터를 이용하는 발달(지적·자폐성)장애인 15명
- 나. 기 간 : 2022년 4월~10월 (매월 둘째, 셋째, 넷째주 토요일 13:00~16:00, 총 21회)
- 다. 장 소 : 지역사회 통합돌봄 공유공간 ‘가치팡’ 및 지역사회 일대
- 라. 내 용 : 공예활동(목공예, 가죽공예 등 월데이 DIY 클래스), 댄스교실(방송댄스), 지역사회나들이
- 마. 소요예산 : 금 7,595,000원정(금칠백오십구만오천원정)
- 바. 수행방법
 - 프로그램 전문 강사 위촉
 - 프로그램 사전 신청자 모집 후 이용자 15명 선정하여 프로그램 진행

구분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13:00~15:00	공예활동	공예활동	지역사회나들이
15:00~16:00	댄스교실	댄스교실	

<별지 4>

5-3.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회적경제 청년혁신 활동가 육성지원」사업

1 사업 개요

□ 목적

- 청년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활동에 경험을 쌓고 지역사회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직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일자리 제공
- 사회적경제기업의 청년 유입을 통해 혁신적인 기업 활동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활력을 제고

□ 개요

- 사업명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역포용형)
- 세부사업 : 사회적경제 청년혁신 활동가 육성지원사업
- 주최/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사업기간 : 약정개시일 ~ 1년 범위내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
 - * 사회적경제기업 범위 : 사회적기업(인증, 예비), 협동조합(일반, 사회적, 소비자),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업, 법인 또는 단체 등
- 지원금 : 신규 채용 1인당 인건비 월1,687,500원
 - * 기업 부담분 22년도 최저임금 보충분 및 4대 보험 등 기업 자부담

2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계획

1. 구인인원 : 3명

2. 청년 일자리 활용계획

- 콘텐츠 관련 영상 촬영 및 편집 : 희망나래 TV 콘텐츠 영상 촬영 및 편집, 운영, 오픈스튜디오, 1인 미디어실 운영
- 행사 콘텐츠 기획 및 운영 : 장애인 미디어 문화아카데미 활성화, 장애인 미디어 축제 개최
- 발달장애인 직무교육 등 : 아날로그 콘텐츠 디지털 변환사업, 쉬운 말 뉴스 및 정보 만들기, 미디어 교육, 바리스타 교육 등

3. 지원할 수 있는 자원 및 교육 등 복지 혜택

- 미디어 콘텐츠 영상 촬영 및 편집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공간 제공
-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 제공

- 직원상조회 운영 및 직원회의를 통해 고충 처리 의견 수렴
- 전직원 단합을 위한 나들이 진행
- 직원 경조사 축하 및 위로
- 직원교육 및 연수 지원을 통한 역량강화 기회 제공
- 직원 명찰, 명함, 근무복 제공, 생일축하 케익 제공
-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4. 일자리 지속가능을 위한 노력 등

- 청년들이 미디어와 문화예술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역할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근무 환경 조성
- 좋아하는 특정 분야에 뛰어난 집중력과 기량을 보이는 이들이 많으며 이들의 가능성과 재능이 널리 발휘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과 삶이 양립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지원
-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의 미션·비전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직무 교육 등을 통한 사회적가치 공유

2022년도 예산서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사회적협동조합등 수입·지출 예산서

회계연도 : 2022년도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설립연월일 2015년 11월 3일	업태 서비스업, 도소매, 서비스	
	인가번호 보건복지부 제79호	사업자등록번호 695-82-00070	
	주소	주사무소 제주도 구산동길 15(아라일동)	
		제1 지사무소 제주도 구산동길 15(아라일동) (희망나래활동센터)	
		제2 지사무소 제주도 중앙로 175, 3층(이도일동) (희망나래일터)	
		제3 지사무소 제주도 조천읍 북촌12길 76-5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	
제4 지사무소 제주도 중앙로 273, 101호(일도이동)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센터)			
출자금	92명/1,562백만원		
주 사업 유형	[]지역사업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취약계층 고용형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		

수입 (단위:원)				지출 (단위: 원)			
구분		금액	구성비(%)	구분		금액	구성비(%)
주 사업	주간활동센터	407,538,000	5.15	주 사업	주간활동센터	407,538,000	5.15
	일터	4,159,240,950	52.59		일터	4,159,240,950	52.59
	동백활동센터	576,035,000	7.28		동백활동센터	576,035,000	7.28
	통합돌봄사업	855,200,000	10.81		통합돌봄사업	855,200,000	10.81
기타 사업	수익사업	50,000,000	0.63	기타 사업	미디어카페 등	107,000,000	1.35
	미디어카페	150,000,000	1.90		인건비	143,254,095	1.81
사업 외 수익	후원금 등	200,000,000	2.53	경상비	운영비 등	98,280,000	1.24
	보조금 등	310,625,000	3.93		재산조성비	1,021,301,000	12.91
	차입금 등	802,200,000	10.14		사업비등	354,915,000	4.49
출자금		65,000,000	0.82	출자금 반환		65,000,000	0.82
전년도이월금		332,463,000	4.20	예비비 등		120,537,905	1.52
합계		7,908,301,950	100.00	합계		7,908,301,950	100.00

작성방법

1. 최초 설립인가 신청 시 조직 개요에 조합명(연합회명), 주소, 출자금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 예시된 항목 외의 수입 또는 지출 항목이 있을 경우 모두 적습니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전체 인건비 총액 중 취약계층인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40% 이상일 것을 판단 기준으로 하는 경우 인건비와 취약계층 인건비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022년도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일반회계 예산(안)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예 산 총 칙

제1조 : 2022년도 사회적협동 희망나래 예산 총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계별	2022년	2021년	증△감	비 고
합 계	1,968,308	1,884,807	83,501	
일반회계	1,910,288	1,884,807	25,481	
소 계	58,020	0	58,020	
미디어카페	40,020		40,020	
돌봄나눔터	18,000		18,000	

제2조 :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 세출예산 성립 후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수입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및 수익자 부담 경비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사업목적에 적절한 경우 우선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 세출액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6조에 의거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제5조 : 세입예산은 해당 관·항·목의 예산을 초과하여 수납할 수 있으며, 내역에 명시되지 않은 수입은 기타수입 으로 세입 조치한다.

제6조 : 세출예산 중 당해년도 회계예산안에 지출하지 못하여 이월되는 경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7조에 불구하고 당해 회계년도 이사회의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 우선 이월하고 다음 회계연도 최초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괄표

사회적협동조합희망나래

(202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

(단위:천원)

세 입						세 출						
관	항	목	2022년(A)	2021년(B)	증감(A-B)	관	항	목	2022년(A)	2021년(B)	증감(A-B)	
세 입 총 계			1,910,288	1,884,807	25,481	세 출 총 계			1,910,288	1,884,807	25,481	
회비수입			30,000	25,850	4,150	사무비				241,534	97,985	143,549
	회비수입		30,000	25,850	4,150		인건비			143,254	6,976	136,278
		회비수입	30,000	25,850	4,150			급여		124,169		124,169
사업수입			201,000	32,335	168,665			제수당		6,600		
	사업수입		201,000	32,335	168,665			퇴직연금		5,647	5,825	△178
		원예수입		11,631	△11,631			사회보험료		6,438	612	5,826
		관측물사업수입	50,000	20,344	29,656			복리후생비		400	539	△139
		교육훈련사업	1,000	360	640		업무추진비			3,600	3,600	
		미디어카페사업	150,000		150,000			직책보조비		3,600	3,600	
출자금			65,000	162,000	△97,000		일반관리비			94,680	87,409	7,271
	출자금		65,000	162,000	△97,000			여비교통비		900	290	
		출자금	65,000	162,000	△97,000			통 신 비		1,680	268	1,412
보조금수입			310,625	196,508	114,117			세금과공과금		36,000	44,447	△8,447
	보조금수입		310,625	196,508	114,117			보 험 료		1,500	218	1,282
		시·도 보조금	50,625		50,625			수도광열비		3,000		3,000
		기타보조금수입	260,000	196,508	63,492			회 의 비		3,700	4,799	△1,099
후원금수입			200,000	269,257	△69,257			협 회 비		1,500	1,400	100
	후원금수입		200,000	269,257	△69,257			소모품비		2,400	34	2,366
		지정후원금	140,000	222,627	△82,627			지급수수료		42,000	35,493	6,507
		비지정후원금	60,000	46,630	13,370		재산조성비			1,021,301	1,633,760	△612,459
차입금			770,000	770,000			시 설 비		1,021,301	1,633,760	△612,459	
	차입금		770,000	770,000			시설비		1,021,300	1,599,000	△577,700	
		금융기관차입금	770,000	770,000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괄표

사회적협동조합희망나래

(202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

(단위:천원)

세 입						세 출					
관	항	목	2022년(A)	2021년(B)	증감(A-B)	관	항	목	2022년(A)	2021년(B)	증감(A-B)
이월금			332,463	393,188	△60,725			자산취득비	1	34,760	△34,759
	이월금		332,463	393,188	△60,725	사업비			118,000	32,899	85,101
		전년도이월금	288,164	358,650	△70,486		사업비		118,000	32,899	85,101
		전년도이월금(후원금)	44,299	34,538	9,761			가족지원사업비	3,000		3,000
잡수입			1,200	35,669	△34,469			원예사업		7,549	
	잡수입		1,200	35,669	△34,469			인쇄판촉물사업	30,000	15,655	14,345
		기타예금이자수입	200	367	△167			미디어카페사업	77,000		77,000
		기타잡수입	1,000	35,302	△34,302			홍보사업	2,000	205	
								교육훈련사업비	3,000	678	2,322
								조합원관리비	3,000	8,811	△5,811
						전 출 금			343,915	20,000	323,915
							전 출 금		343,915	20,000	323,915
								희망나래활동센터	1	5,000	△4,999
								희망나래일터	333,914		333,914
								희망나래공동체		5,000	△5,000
								동백주간활동센터	10,000	10,000	
						반 환 금			65,001	19,000	46,001
							반 환 금		65,001	19,000	46,001
								출자금반환금	65,000	19,000	46,000
								보조금반환금	1		1
						예비비 및 기타			120,537	81,163	39,373
							예비비		120,537	81,163	39,373
								예비비	120,537	81,163	39,373

2022년도 세입 예산서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202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

(단위:천원)

과 목			2022년 (A)	2021년 (B)	증감 (A- B)	구 분			산 출 내 역
						관	항	목	
세 입 총 계			1,910,288	1,884,807	25,481	310,625	1,355,364	244,299	
회비수입			30,000	25,850	4,150		30,000		
	회비수입		30,000	25,850	4,150		30,000		
		회비수입	30,000	25,850	4,150		30,000		조합원회비 20,000원 × 100명 × 12월 = 24,000,000원 임원회비 50,000원 × 10명 × 12월 = 6,000,000원
사업수입			201,000	32,335	168,665		201,000		
	사업수입		201,000	32,335	168,665		201,000		
		원예수입		11,631					
		판촉물사업수입	50,000	20,344	29,656		50,000		판촉물수입 5,000,000원 × 10월 = 50,000,000원
		교육훈련사업	1,000	360	640		1,000		교육훈련사업 500,000원 × 2회 = 1,000,000원
		미디어카페사업	150,000	0	150,000		150,000		미디어카페사업 15,000,000원 × 10월 = 150,000,000원
출자금			65,000	162,000	△97,000		65,000		
	출자금		65,000	162,000	△97,000		65,000		
		출자금	65,000	162,000	△97,000		65,000		출자금 5,000,000원 × 13명 = 65,000,000원
보조금수입			310,625	196,508	114,117	310,625			
	보조금수입		310,625	196,508	114,117	310,625			
		시·도 보조금	50,625		50,625	50,625			청년일자리 1,687,500원 × 10월 × 3명 = 50,625,000원
		기타보조금수입	260,000	196,508	63,492	260,000			고용장려금 65,000,000원 × 4월 = 260,000,000원
후원금수입			200,000	269,257	△69,257			200,000	
	후원금수입		200,000	269,257	△69,257			200,000	
		지정후원금	140,000	222,627	△82,627			140,000	지정후원금 14,000,000원 × 10월 = 140,000,000원
		비지정후원금	60,000	46,630	13,370			60,000	비지정후원금 5,000,000원 × 12월 = 60,000,000원

2022년도 세입 예산서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202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

(단위:천원)

과 목			2022년 (A)	2021년 (B)	증감 (A- B)	구 분			산 출 내 역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	
관	항	목							
		차입금	770,000	770,000			770,000		
		차입금	770,000	770,000			770,000		
		금융기관차입금	770,000	770,000			770,000		금융기관 차입금 770,000,000원 × 1회 = 770,000,000원
		이월금	332,463	393,188	△60,725		288,164	44,299	
		이월금	332,463	393,188	△60,725		288,164	44,299	
		전년도이월금	288,164	358,650	△70,486		288,164		이월금 = 288,164,351원
		전년도이월금(후원금)	44,299	34,538	9,761			44,299	이월금(후원금) = 44,298,509원
		잡수입	1,200	35,669	△34,469		1,200		
		잡수입	1,200	35,669	△34,469		1,200		
		기타예금이자수입	200	367	△167		200		기타예금이자 = 200,000원
		기타잡수입	1,000	35,302	△34,302		1,000		잡수입 = 1,000,000원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서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202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

(단위:천원)

과 목			2022년 (A)	2021년 (B)	증감(A-B)	구 분			산 출 내 역		
관	항	목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			
세 출 총 계			1,910,288	1,884,807	25,481	310,625	1,355,364	244,299			
사무비			241,534	97,985	143,549	103,704	92,630	45,200			
	인건비		143,254	6,976	136,278	103,704	39,550				
		급여	124,169			97,704	26,465				
								급여(매니저)	2,205,390 × 12월 × 1명	= 26,464,680원	
								청년일자리	1,920,000원 × 10월 × 3명	= 57,600,000원	
								근로장애인	1,114,000원 × 9월 × 4명	= 40,104,000원	
		제수당	6,600			6,000	600				
								매니저	300,000원 × 2월 × 1명	= 600,000원	
								청년일자리	180,000원 × 10월 × 3명	= 5,400,000원	
								근로장애인	150,000원 × 1월 × 4명	= 600,000원	
		퇴직연금	5,647	5,825	△178		5,647				
								퇴직연금	67,768,680원 × 1/12	= 5,647,390원	
		사회보험료	6,438	612	5,826		6,438				
								사회보험료	67,768,680원 × 9.50%	= 6,438,025원	
		복리후생비	400	539	△139		400				
								복리후생비	50,000원 × 8명	= 400,000원	
	업무추진비		3,600	3,600			3,600				
		직책보조비	3,600	3,600			3,600				
								직책보조비	300,000 × 12월	= 3,600,000원	
	일반관리비		94,680	87,409	7,271		49,480	45,200			
		여비교통비	900	290			900				
								출장여비	300,000원 × 3월	= 900,000원	
		통신비	1,680	268	1,412		1,680				
								통신비	140,000원 × 12월	= 1,680,000원	
		세금과공과금	36,000	44,447	△8,447		7,000	29,000			
								세금과공과금	3,000,000원 × 12월	= 36,000,000원	
		보험료	1,500	218	1,282		1,500				
								보험료	1,500,000원 × 1월	= 1,500,000원	
		수도광열비	3,000				3,000				
								수도광열비	250,000원 × 12월	= 3,000,000원	
		회의비	3,700	4,799			3,700				
								정기총회	300,000원 × 1월	= 300,000원	
								이사회	600,000원 × 4월	= 2,400,000원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서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202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

(단위:천원)

과 목			2022년 (A)	2021년 (B)	증감(A-B)	구 분			산 출 내 역
관	항	목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	
									인사위원회 100,000원 × 10월 = 1,000,000원
		협 회 비	1,500	1,400			1,500		협회비 1,500,000원 × 1식 = 1,500,000원
		소모품비	2,400	34			2,400		소모품비 200,000원 × 12월 = 2,400,000원
		지급수수료	42,000	35,493			25,800	16,200	지급수수료 3,500,000원 × 12월 = 42,000,000원
		공익운영비	2,000	460			2,000		공익운영비 1,000,000원 × 2식 = 2,000,000원
재산조성비			1,021,301	1,633,760	△612,459		972,202	49,099	
	시 설 비		1,021,301	1,633,760	△612,459		972,202	49,099	
		시설비	1,021,300	1,599,000	△577,700		972,201	49,099	복합공간신축비 = 1,021,300,000원
		자산취득비	1	34,760	△34,759		1		과목존치 = 1,000원
사업비			118,000	32,899	85,101	13,007	104,993		118,000
	사업비		118,000	32,899	85,101	13,007	104,993		
		가족지원사업비	3,000				3,000		가족한마당 = 3,000,000원
		원예사업		7,549	△7,549				과목폐지
		인쇄판촉물사업	30,000	15,655	14,345		30,000		인쇄판촉물사업 2,500,000원 × 12월 = 30,000,000원
		미디어카페사업	77,000			13,007	63,993		미디어카페 운영 7,000,000원 × 11월 = 77,000,000원
		홍보사업	2,000	205			2,000		홍보사업비 1,000,000원 × 2식 = 2,000,000원
		교육훈련사업비	3,000	678	2,322		3,000		조합원교육 500,000원 × 2회 = 1,000,000원
									임원연수 1,000,000원 × 1회 = 1,000,000원
									굿리더연수 1,000,000원 × 1회 = 1,000,000원
		조합원관리비	3,000	8,811	△5,811		3,000		조합원관리비 300,000원 × 10회 = 3,000,000원
전 출 금			343,915	20,000		193,914	1	150,000	
	전 출 금		343,915	20,000		193,914	1	150,000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서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202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

(단위:천원)

과 목			2022년 (A)	2021년 (B)	증감(A-B)	구 분			산 출 내 역
관	항	목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	
		희망나래활동센터	1	5,000			1	과목존치	= 1,000원
		희망나래일터	333,914	0		193,914	140,000	과목존치	= 333,914,000원
		희망나래공동체		5,000				과목폐지	
		동백주간활동센터	10,000	10,000			10,000	동백주간활동센터	= 10,000,000원
반 환 금			65,001	19,000			65,001		
		반 환 금	65,001	19,000			65,001		
		출자금반환금	65,000	19,000			65,000	출자반환금	= 65,000,000원
		보조금반환금	1				1	과목존치	= 1,000원
예비비및기타			120,537	81,163	39,373		120,537		
		예비비	120,537	81,163	39,373		120,537		
		예비비	120,537	81,163	39,373		120,537	예비비	= 120,536,765원

2022년도 특별회계 예산 총괄표

사회적협동조합희망나래

(202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

(단위:천원)

세 입						세 출						
관	항	목	2022년(A)	2021년(B)	증감(A-B)	관	항	목	2022년(A)	2021년(B)	증감(A-B)	
세 입 총 계			40,020		40,020	세 출 총 계			40,020		40,020	
후원금수입			40,000		40,000	운영비			2,500		2,500	
	후원금수입		40,000		40,000		운영비			2,500		2,500
		지정후원금	40,000		40,000			관리운영비	2,500		2,500	
잡수입			20		20	사업비			37,500		37,500	
	잡수입		20		20		교육훈련사업			10,000		10,000
		기타예금이자수입	20		20			미디어초급교육	4,240		4,240	
								미디어심화교육	5,450		5,450	
								팀프로젝트	310		310	
								가치판사업확대	17,500		17,500	
								워크숍	700		700	
								벤치마킹	1,500		1,500	
								희망나래TV운영	6,000		6,000	
								디지털변환사업	2,900		2,900	
								발달장애인일자리창출	4,800		4,800	
								지역네트워크자문회의	1,600		1,600	
								커뮤니티 공간조성	10,000		10,000	
								미디어인프라구축	7,500		7,500	
								미디어카페운영	1,900		1,900	
								홍보사업	600			
						반환금			20			
							반환금			20		
								반환금	20			

2022년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서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2022년 1월1일부터12월31일 까지)

(단위:천원)

과 목			2022년(A)	2020년(B)	증감(A-B)	구 분			산 출 내 역
관	항	목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	
세 입 총 계			40,020		40,020			40,020	
후원금수입			40,000		40,000			40,000	
	후원금수입		40,000		40,000			40,000	
		지정후원금	40,000		40,000			40,000	미디어 40,000,000원
잡수입			20		20			20	
	잡수입		20		20			20	
		기타예금이자수입	20		20			20	기타예금이자 20,000원

2021년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서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2021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

(단위:천원)

과 목		2022년(A)	2021년(B)	증감(A-B)	구 분			산 출 내 역
관	항 목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	
세 출 총 계		40,020		40,020		20	40,000	
운영비		2,500		2,500			2,500	
	운영비	2,500		2,500			2,500	
	관리운영비	2,500		2,500			2,500	관리운영비 = 2,500,000원
사업비		37,500		37,500			37,500	
	교육훈련사업	10,000		10,000			10,000	
	미디어초급교육	4,240		4,240			4,240	미디어초급교육 = 4,240,000원
	미디어심화교육	5,450		5,450			5,450	미디어심화교육 = 5,450,000원
	팀프로젝트	310		310			310	팀프로젝트 = 310,000원
	가치판사업확대	17,500		17,500			17,500	
	워크숍	700		700			700	워크숍 = 700,000원
	벤치마킹	1,500		1,500			1,500	벤치마킹 = 1,500,000원
	희망나래TV운영	6,000		6,000			6,000	희망나래TV운영 = 6,000,000원
	디지털변환사업	2,900		2,900			2,900	디지털변환사업 = 2,900,000원
	발달장애인일자리창출	4,800		4,800			4,800	발달장애인일자리창출 = 4,800,000원
	지역네트워크자문회의	1,600		1,600			1,600	지역네트워크자문회의 = 1,600,000원
	커뮤니티 공간조성	10,000		10,000			10,000	
	미디어인프라구축	7,500		7,500			7,500	미디어인프라구축 = 7,500,000원
	미디어카페운영	1,900		1,900			1,900	미디어카페운영 = 1,900,000원
	홍보사업	600		600			600	홍보사업 = 600,000원
반환금		20		20		20		
	반환금	20		20		20		
	반환금	20		20		20		반환금 = 20,000원

2021년도 특별회계 예산 총괄표

사회적협동조합희망나래

(2021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

(단위:천원)

세 입						세 출						
관	항	목	2022년 (A)	2021년 (B)	증감(A-B)	관	항	목	2021년 (A)	2021년 (B)	증감(A-B)	
세 입 총 계			18,000		18,000	세 출 총 계			18,000		18,000	
후원금수입			18,000		18,000	사업비			18,000		18,000	
	후원금수입		18,000		18,000		사업비			18,000		18,000
		지정 후원금	18,000		18,000			개별활동	3,165		3,165	
								건강증진프로그램	2,800		2,800	
								여가프로그램	4,320		4,320	
								댄스교실	1,120		1,120	
								공예활동	5,950		5,950	
								지역사회나들이	525		525	
								홍보사업	120		120	

2021년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서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2021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

(단위:천원)

과 목			2021년 (A)	2020년 (B)	증감 (A- B)	구 분			산 출 내 역
관	항	목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	
세 입 총 계			18,000		18,000			18,000	
후원금수입			18,000		18,000			18,000	
	후원금수입		18,000		18,000			18,000	
		지정후원금	18,000		18,000			18,000	돌봄나눔터 18,000,000원

2021년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서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2021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

(단위:천원)

과 목			2021년 (A)	2020년 (B)	증감 (A- B)	구 분			산 출 내 역				
관	항	목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					
세 출 총 계			18,000		18,000			18,000					
사업비			18,000		18,000			18,000					
사업비			18,000		18,000			18,000					
		개별활동	3,165		3,165			3,165	교재 및 교구 구입	150,000원 ×	9월	=	1,350,000원
									다과비	201,667원 ×	9월	=	1,815,000원
		건강증진프로그램	2,800		2,800			2,800	파크골프 강사비	200,000원 ×	2회 ×	6월 =	2,400,000원
									재료비	50,000원 ×	8명 ×	=	400,000원
		여가프로그램	4,320		4,320			4,320	도예 강사비	200,000원 ×	2회 ×	6월 =	2,400,000원
									재료비	20,000원 ×	8명 ×	12회 =	1,920,000원
		댄스교실	1,120		1,120			1,120	강사비	80,000원 ×	2회 ×	7월 =	1,120,000원
		공예활동	5,950		5,950			5,950	공예 강사비	200,000원 ×	2회 ×	7월 =	2,800,000원
									재료비	15,000원 ×	15명 ×	14회 =	3,150,000원
		지역사회나들이	525		525			525	다과비	5,000원 ×	15명 ×	7월 =	525,000원
		홍보사업	120		120			120	현수막			=	120,000원

제 7호 의안

2022년 추가경정예산 위임의 건

제의 관계조항 : 정관 제33조

주문사항 :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 위임의 건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정관

제정 2015. 11. 03

개정 2017. 03. 14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라고 한다.

제2조(목적)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이하 ‘조합’이라 한다)는 조합원의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게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환경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전역으로 한다.

제6조(광고방법) ① 조합의 광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광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광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5.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③ 조합원의 자격과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후견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직원조합원이 퇴사한 경우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30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한다. (개정 2017. 03. 14)

1. 「의료급여법」 제3자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⑥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9조(출자증서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출자금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출자금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제21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1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동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기본회비
2. 특별회비
3. 사용료
4.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4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5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는 아니 된다.

제26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30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에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7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8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의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9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30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1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7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2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2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

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2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5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제36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7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8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40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상임이사 등을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2조(이사회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60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이사회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4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5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6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총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총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상임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4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④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⑦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임원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1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 ④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에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3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4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5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56조(임원의 보수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8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

- 4. 사업결과 보고서
- 5.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현황
- ⑦ 조합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기부금의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제59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60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 1. 장애인 및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사업
 - 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 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개정 2017. 03. 14.)
- 2. 장애인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 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 나.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물품 생산 및 제조·판매, 서비스 사업
- 3. 그 밖의 협동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 2.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 3.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4. 조합원 상호부조 사업

③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④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방식은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취약계층 고용형으로 한다.

- 1.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인 경우, 사업계획서 상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게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이상일

것으로 한다.

2. 취약계층 고용형인 경우, 사업계획서 상 전체 직원 중 취약계층인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이상일 것으로 한다.

⑤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제61조(상호부조) ① 조합은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 나눠 낸 상호부조회비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그 기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한다.

② 조합원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조합원 가운데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조합원에 한해서 상호부조사업 참여자격을 가진다.

③ 조합원 1인당 상호부조의 범위는 1,000,000원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의 상호부조회비는 30,000원 이내로 한다. 상호부조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상호부조 회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⑤ 상호부조 계약은 조합의 상호부조사업부 또는 계약사업부와 조합원 간에 직접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제3의 판매조직이나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⑥ 상호부조 회비 적립금의 운영은 지나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예금 및 국공채 이외의 주식, 회사채, 여타 시장성 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상호부조계약의 양식, 상호부조 회비의 사용, 상호부조 회비의 환급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⑧ 상호부조 사업은 제60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제62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발생할 경우 이사회에 결정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상호부조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3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계

제64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5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6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7조(결산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손실금의 보전)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69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0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1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2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공익법인
4. 국고

부칙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법 인 명 :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이 사 장 : 최 영 열

본점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산동길 15(아라일동)